

사회적경제도시, 춘천

춘천형 ESG+ 매뉴얼



1. 춘천형 ESG+ 지표 개발 방향

□ ESG 개념 및 중요성

- (개념)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

(「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
- (사회: 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임.
- (지배구조: 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됨.
- (중요성)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
 - (기업목적 측면) 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로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
 - (자본조달 측면) ESG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측면에서 ESG는 필수적 관리 요소.
 - (지속가능 측면) 지속가능성의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발전한 ESG 요소들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필수적임.

□ 춘천형 ESG+지표 개발 목적 및 필요성

-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으나, ESG 경영의 적용이나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단위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ESG 경영 도입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활동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주체로 기존의 ESG 지

표를 적용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만이 지닌 고유한 사회성과를 드러 낼 수 없다는 한계 지점도 있음.

-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를 고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성과를 드러 낼 수 있는 추천형 ESG+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돕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외부 기관과의 ESG 파트너십을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천형 ESG+ 지표 활용 계획

- (ESG 경영 내부관리) 추천형 ESG+ 지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비 재무적 요소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
- (사회적가치 측정 대응) 추천형 ESG+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SVI 및 SPC 등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를 함께 관리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ESG 친화적 시장 연계) 기업의 ESG 보고서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ESG 친화적 시장을 발굴 및 거래 연결 추진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 시장기획자 사업과 연계 하여 진행하고자 함.
- (ESG 투자 기금 연계) 장기 과제로 ESG 투자기금을 연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2. 추천형 ESG+ 지표

□ 추천형 ESG+ 지표 구성 방향 개요

- 추천형 ESG+ 지표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ESG 지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2021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중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지표를 기반으로 두고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재)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성과를 화폐로 도출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 하였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K-ESG 지표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②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강조 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인센티브 방식을 적용③ ESG+ 관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구성 |
|--|

- 2025 추천형 ESG+ 지표는 영역-범주-진단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 영역(사회 성과,

거버넌스 성과, 환경성과, 경제 성과), 10개 범주와 27개 진단항목으로 설계되었음.

○ 각각의 진단항목별로 측정 기준이 별도 존재하며 진단항목별 총 배점은 100점이며, 전체 진단항목에 배점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경제 성과와 관련한 4개 항목(24~27 지표)은 점수 배점을 부여하지 않은 관리용 진단 항목임.

□ **추천형 ESG+ 지표**

추천형 ESG+ 지표		
영역(4)	범주(10)	진단항목(27)
사회(S) (80)	사회적가치 /ESG 경영 구축 (7)	1. 사회적가치/지속가능경영 추구
		2. 사회적가치/지속가능경영 성과 관리체계 운영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23)	3-1.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문화 형성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
		3-2. 취약계층 고용 및 급여 비율 (취약계층 고용의무 기업)
		4. 화폐가치(SPC)로 측정된 사회·환경 성과
		5. 화폐가치로 측정되지 못한 사회·환경 성과
		6.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양질의 노동 (10)	7. 고용의 질
	양성평등 (10)	8. 여성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9. 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역사회와 협력(10)	10.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11.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회적 환원(10)	12. 근로자 복리후생/근로환경 개선
13. 구성원 봉사 참여		
일자리 창출(10)	14. 근로자 임금 수준	
	15.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16.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17. 정규직 비율	
거버넌스 성과(G) (10)	민주적 의사결정 (10)	18.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비율
		19. 회의 결과 공유 비율
		20. 이사 전문성
		21. 전체 이사 출석률
환경성과(E) (10)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10)	2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23.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활동
경제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4. 매출 성과
		25. 영업 성과
		26. 노동생산성
		27. 혁신성

□ **추천형 ESG+ 지표와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와의 연계**

추천형 ESG+ 지표			비고	
영역(4)	범주(10)	진단항목(27)	SVI 연계 지표	
사회(S) (80)	사회적가치/ESG 경영 구축 (7)	1. 사회적가치/지속가능경영 추구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 사회적가치/지속가능경영 성과 관리체계 운영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23)	3-1.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문화 형성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	3-2. 취약계층 고용 및 급여 비율 (취약계층 고용의무 기업)	3.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내부 운영)
		4. 화폐가치(SPC)로 측정된 사회·환경 성과		3.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외부 운영)
		5. 화폐가치로 측정되지 못한 사회·환경 성과	3.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외부 운영)	
		6. 근로자 보건 및 안전	3. 주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내부 운영)	
	7. 고용의 질			
	8. 여성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양성평등 (10)	9. 성평등을 위한 노력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10.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지역사회와 협력(10)	11. 지역사회와의 협력	5.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12. 근로자 복리후생/근로환경 개선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사회적 환원 (10)	13. 구성원 봉사 참여		
		일자리 창출 (10)	14. 근로자 임금 수준	8. 근로자 임금 수준
	15.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16.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10. 고용 성과	
	17. 정규직 비율		10. 고용 성과	
거버넌스 성과 (G) (10)	민주적 의사결정 (10)	18.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비율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19. 회의 결과 공유 비율		
		20. 이사 전문성		
		21. 전체 이사 출석률		
환경성과 (E) (10)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10)	2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3.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외부 운영)	
		23.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활동		
경제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4. 매출 성과	11. 매출 성과	
		25. 영업 성과	12. 영업 성과	
		26. 노동생산성	13. 노동생산성	
		27. 혁신성	14. 혁신노력도	

춘천형 ESG+ 진단항목 정의서

1. 사회적가치/지속가능경영 추구
2. 사회적가치/지속가능경영 성과 관리체계 운영
- 3-1.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문화 형성(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
- 3-2. 취약계층 고용 및 급여비율(취약계층 고용의무 기업)
4. 화폐가치로 측정된 사회·환경성과
5.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못한 사회·환경성과
6. 근로자 보건 및 안전
7. 고용의 질
8. 여성 고용 비율 및 급여 비율
9. 성평등을 위한 노력
10.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11. 지역사회와의 협력
12. 근로자 복리후생/근로환경 개선
13. 구성원 봉사 참여
14. 근로자 임금 수준
15.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16.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17. 정규직 비율
18.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비율
19. 회의 결과 공유 비율
20. 이사 전문성
21. 전체 이사 출석률
2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23.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을 위한 활동
24. 매출성과
25. 영업 성과
26. 노동 생산성
27. 혁신성

1. 사회적가치/ESG 경영 추구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1-1	사회성과	사회적가치/ESG경영 구축											
SVI 연계 지표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정의 - 조직이 명시적으로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 측정 기준 - 조직의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서(정관 등)의 구비 여부 - 사회적 목적의 대외 공표 여부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방법 : 계량 평가(문서 구비 및 대외 공표 여부 확인) ① 조직의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문서*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또는 목표가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 ② ESG/사회적 목적의 대외적인 공표 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홈페이지/SNS 등에 정관 공개 또는 ESG/사회적 목적 명시, 사회적기업 자율경영 공시/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조직 홍보물/리플렛 등 <p>[데이터 원천] ▲ESG/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대외 공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기타 조직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등급 기준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없음</td> </tr> <tr> <td>2단계</td> <td>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음</td> </tr> <tr> <td>3단계</td> <td>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없음	2단계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음	3단계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없음														
2단계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음														
3단계	ESG/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회적 목적은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목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table border="1"> <tr> <td>① 사회적 목적 작성: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td> </tr> <tr> <td>②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문서 작성</td> </tr> <tr> <td>③ 대외 공표 방식 작성</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사례 <table border="1"> <tr> <td>사회적 목적</td> <td>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td> </tr> <tr> <td>사회적 목적 명시자료</td> <td>정관</td> </tr> <tr> <td>외부 공표</td> <td>홈페이지</td> </tr> </table>			① 사회적 목적 작성: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	②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문서 작성	③ 대외 공표 방식 작성	사회적 목적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외부 공표	홈페이지			
① 사회적 목적 작성: 기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을 의미															
② 사회적 목적이 명시된 문서 작성															
③ 대외 공표 방식 작성															
사회적 목적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외부 공표	홈페이지														

2. 사회적가치/ESG 경영 성과 관리 체계 운영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1-2	사회성과	사회적가치/ESG 경영 구축																					
SVI 연계 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지속가능경영/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계획-실행-점검-피드백’ 등 일련의 활동을 관리·평가·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측정하는 지표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사회적가치 측정 기준, 담당 인력, 활용내용, 결과 모니터링, 내·외부 공유 등 단계별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성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 방법 : 계량 평가(각 판단 요소별 증빙자료 구비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단 요소 : 측정기준, 담당인력,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내 공유 <p>[데이터 원천] ▲직전년도 사업계획서(또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업무분장표, ▲ESG/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양식 참조), ▲ESG/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양식 참조), ▲ 기타 조직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요건1 : 측정 기준</td> <td> 내용 : 조직의 자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별 기준 설정 여부 방법 : 측정연도(직전년도)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기업 자체 양식) 등을 통해 사회적 성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td> </tr> <tr> <td>요건2 : 담당 인력</td> <td> 내용 :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여부 방법 : 조직 업무분장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대표자는 실적에서 제외 </td> </tr> <tr> <td>요건3 : 성과보고서</td> <td> 내용 : 조직이 자체 설정한 사회적 성과 목표에 따라 측정연도(직전년도)에 추진한 활동 결과의 증빙자료 구축 여부 방법 : 측정연도(직전년도)의 사업 결과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 등 관련 활동 결과의 증빙 여부 확인 </td> </tr> <tr> <td>요건4 : 평가위원회</td> <td> 내용 : 조직이 추진한 사회적 성과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 위원의 위촉 및 평가 운영 여부(최소 1인 이상 외부위원 위촉) 방법 : 평가위원(내·외부)이 위촉되고, 평가 의견 및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td> </tr> <tr> <td>요건5 : 평가결과 사내공유</td> <td> 내용 :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평가 결과의 임직원 대상 공유 여부 방법 : 사내 게시판 부착, 인트라넷, 메일 공진 등(증빙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료)을 활용한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 공유 여부 확인 </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선택형)</p> <table border="1"> <tr> <td>미충족</td> <td>1개 충족</td> <td>2개 충족</td> <td>3개 충족</td> <td>4개 충족</td> <td>5개 충족</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요건1 : 측정 기준	내용 : 조직의 자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별 기준 설정 여부 방법 : 측정연도(직전년도)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기업 자체 양식) 등을 통해 사회적 성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요건2 : 담당 인력	내용 :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여부 방법 : 조직 업무분장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대표자는 실적에서 제외	요건3 : 성과보고서	내용 : 조직이 자체 설정한 사회적 성과 목표에 따라 측정연도(직전년도)에 추진한 활동 결과의 증빙자료 구축 여부 방법 : 측정연도(직전년도)의 사업 결과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 등 관련 활동 결과의 증빙 여부 확인	요건4 : 평가위원회	내용 : 조직이 추진한 사회적 성과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 위원의 위촉 및 평가 운영 여부(최소 1인 이상 외부위원 위촉) 방법 : 평가위원(내·외부)이 위촉되고, 평가 의견 및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요건5 : 평가결과 사내공유	내용 :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평가 결과의 임직원 대상 공유 여부 방법 : 사내 게시판 부착, 인트라넷, 메일 공진 등(증빙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료)을 활용한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 공유 여부 확인	미충족	1개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요건1 : 측정 기준	내용 : 조직의 자체적인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별 기준 설정 여부 방법 : 측정연도(직전년도)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기업 자체 양식) 등을 통해 사회적 성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각 목표별 등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요건2 : 담당 인력	내용 :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여부 방법 : 조직 업무분장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 관리보고서의 담당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대표자는 실적에서 제외																								
요건3 : 성과보고서	내용 : 조직이 자체 설정한 사회적 성과 목표에 따라 측정연도(직전년도)에 추진한 활동 결과의 증빙자료 구축 여부 방법 : 측정연도(직전년도)의 사업 결과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사회적성과관리 보고서 등 관련 활동 결과의 증빙 여부 확인																								
요건4 : 평가위원회	내용 : 조직이 추진한 사회적 성과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외부 위원의 위촉 및 평가 운영 여부(최소 1인 이상 외부위원 위촉) 방법 : 평가위원(내·외부)이 위촉되고, 평가 의견 및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요건5 : 평가결과 사내공유	내용 :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평가 결과의 임직원 대상 공유 여부 방법 : 사내 게시판 부착, 인트라넷, 메일 공진 등(증빙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료)을 활용한 사회적 성과 평가 결과 공유 여부 확인																								
미충족	1개 충족	2개 충족	3개 충족	4개 충족	5개 충족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사례 		
	판단요소	구축여부	근거
	측정기준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목표 및 등급설정
	담당인력	유	업무분장표(사회적 성과관리 담당자 및 해당업무 명시)
	성과보고서	유	제시된 사회적 성과관리보고서(제3장 양식참조) 항목에 따른 활동내용 및 등급결과 기재함
	평가위원회	유	평가위원 위촉(내부3인 외부1인) 및 평가의견·서명 확인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인트라넷(메일)을 통한 전체 임직원 대상의 평가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제시된 각 판단 요소에 대해 조직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해당 내용의 확인으로 단계별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수준을 측정 - 5가지 세부 요소는 모두 개별적으로 측정 진행 및 점수 배점 - 소규모/신생 조직의 경우 5가지 판단 요소를 모두 갖추고 증빙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조직이 판단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다면 아래의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를 안내하여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 및 추진·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판단요소	증빙자료 인정 범위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대상연도(2024년)의 사업계획서·결과보고 내에 사회적 성과 목표 및 등급기준 기재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사회적 성과목표·등급 기재 ·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회적 성과 관리 관련 자료 및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등 		
담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에 '사회적 성과 관리 담당' 명시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상 담당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로 증빙 확인 *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불가인 경우, 근로계약서·급여대장을 통해 근로자성 확인 가능 		
성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연도(2024년) 사업 결과보고 내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유무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에 따른 '사회적성과 추진활동' 및 '등급·결과' 기재 · 기업 자체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외부기관의 사회적 성과평가 자료 등(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불인정 * '24년도 자율경영공시 참여 확인서 캡처본(참여일 확인 가능) 인정 *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평가 유효기간/협약기간 내 SVI 측정 시 인정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성과 평가위원 위촉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부터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위원 위촉 필수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항목에 따른 내·외부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서명의 기재유무 (연 1회 이상의 평가실시 내역 확인) · 외부전문 사회적 성과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를 받을 시, 평가위원회를 갖추고 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내·외부인사가 포함된 조직운영 의사결정기구에서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회의록, 결과보고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실적 인정 		
평가결과 사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성과 추진활동에 대한 내·외부인사의 평가까지 수행한 사회적 성과 평가결과 등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로의 공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정 · 측정연도('24년도) 사업계획서 내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계획(시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해연도('25년도) 작성한 성과보고서 및 사내공유 실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게재, 인트라넷 공유, 사내 게시판 부착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참고 예시(평가를 받는 기업용) 																																																																																																																																				
비고	<p>〈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6">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td> <td colspan="7">사례1)</td> </tr> <tr> <td>지표</td> <td>세부목표</td> <td colspan="5">등급</td> </tr> <tr> <td></td> <td></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 rowspan="2">지역사회 환경보호</td> <td>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10톤 감축</td> <td>10톤 이상</td> <td>7톤 이상</td> <td>4톤 이상</td> <td>1톤 이상</td> <td>0톤</td> </tr> <tr> <td>공지전 환경정화 운동 5회 (임직원 봉사활동)</td> <td>5회 이상</td> <td>4회 이상</td> <td>3회 이상</td> <td>2회 이상</td> <td>1회 이상</td> </tr> <tr> <td>취약계층 고용창출</td> <td>관내 취약계층 10명 고용 달성</td> <td>10명 이상</td> <td>7명 이상</td> <td>4명 이상</td> <td>1명 이상</td> <td>0명</td> </tr> <tr> <td colspan="7">사례2)</td> </tr> <tr> <td>지표</td> <td>세부목표</td> <td colspan="5">등급</td> </tr> <tr> <td></td> <td></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 rowspan="2">취약계층 고용창출</td> <td>관내 취약계층 7명 고용 달성</td> <td>7명 이상</td> <td>5명 이상</td> <td>3명 이상</td> <td>2명 이상</td> <td>0명</td> </tr> <tr> <td>지역사회 서비스</td> <td>봉사활동, 위문방문 지원 및 기탁</td> <td>5회 이상</td> <td>4회 이상</td> <td>3회 이상</td> <td>2회 이상</td> <td>1회 이상</td> </tr> <tr> <td colspan="7">사례3)</td> </tr> <tr> <td>지표</td> <td>세부목표</td> <td colspan="5">등급</td> </tr> <tr> <td></td> <td></td>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 rowspan="2">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기부</td> <td>2025년 취약계층 돕기 1,000만원 기부</td> <td>1,000만원 이상</td> <td>800만원 이상</td> <td>600만원 이상</td> <td>500만원 이상</td> <td>500만원 미만</td> </tr> <tr> <td>취약계층 고용창출</td> <td>2025년 취약계층 30명 고용 달성</td> <td>30명 이상</td> <td>24명 이상</td> <td>18명 이상</td> <td>15명 이상</td> <td>15명 미만</td> </tr> <tr> <td rowspan="2">취약계층 미용봉사</td> <td>관내 취약계층 200명 미용봉사</td> <td>200명 이상</td> <td>160명 이상</td> <td>120명 이상</td> <td>100명 이상</td> <td>100명 미만</td> </tr> <tr> <td></td> <td></td> <td>175명</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 가이드 :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측정년도의 목표와 등급을 기업별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지속 관리 </p>	구분	내용						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	사례1)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10톤 감축	10톤 이상	7톤 이상	4톤 이상	1톤 이상	0톤	공지전 환경정화 운동 5회 (임직원 봉사활동)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취약계층 고용창출	관내 취약계층 10명 고용 달성	10명 이상	7명 이상	4명 이상	1명 이상	0명	사례2)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취약계층 고용창출	관내 취약계층 7명 고용 달성	7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0명	지역사회 서비스	봉사활동, 위문방문 지원 및 기탁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사례3)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기부	2025년 취약계층 돕기 1,000만원 기부	1,0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취약계층 고용창출	2025년 취약계층 30명 고용 달성	30명 이상	24명 이상	18명 이상	15명 이상	15명 미만	취약계층 미용봉사	관내 취약계층 200명 미용봉사	200명 이상	160명 이상	12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미만			175명			
	구분	내용																																																																																																																																			
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	사례1)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10톤 감축	10톤 이상	7톤 이상	4톤 이상	1톤 이상	0톤																																																																																																																														
		공지전 환경정화 운동 5회 (임직원 봉사활동)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취약계층 고용창출	관내 취약계층 10명 고용 달성	10명 이상	7명 이상	4명 이상	1명 이상	0명																																																																																																																														
	사례2)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취약계층 고용창출	관내 취약계층 7명 고용 달성	7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0명																																																																																																																														
		지역사회 서비스	봉사활동, 위문방문 지원 및 기탁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사례3)																																																																																																																																				
지표	세부목표	등급																																																																																																																																			
		S	A	B	C	D																																																																																																																															
지역사회 취약계층 돕기기부	2025년 취약계층 돕기 1,000만원 기부	1,0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취약계층 고용창출	2025년 취약계층 30명 고용 달성	30명 이상	24명 이상	18명 이상	15명 이상	15명 미만																																																																																																																														
취약계층 미용봉사	관내 취약계층 200명 미용봉사	200명 이상	160명 이상	120명 이상	100명 이상	100명 미만																																																																																																																															
			175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2">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td> <td colspan="5">사례1)</td> </tr> <tr> <td>지표</td> <td>세부목표</td> <td>추진 활동내용 및 실적</td> <td>결과</td> <td>등급</td> </tr> <tr> <td rowspan="2">지역사회 환경보호</td> <td>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10톤 감축</td> <td>지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내역 기재</td> <td>7.5톤 감축</td> <td>A</td> </tr> <tr> <td>공지전 환경정화 운동 5회 (임직원 봉사활동)</td> <td></td> <td>2회 실시</td> <td>C</td> </tr> <tr> <td>취약계층 고용창출</td> <td>관내 취약계층 10명 고용 달성</td> <td></td> <td>5명 고용</td> <td>B</td> </tr> <tr> <td colspan="5">사례2)</td> </tr> <tr> <td>지표</td> <td>세부목표</td> <td>추진내용</td> <td>결과</td> <td>등급</td> </tr> <tr> <td rowspan="2">사회공헌 프로젝트</td> <td>리플릿 무료제작</td> <td>비영리단체 리플릿 무료 제작건</td> <td>16회</td> <td>S</td> </tr> <tr> <td>온라인 마케팅 무료교육</td> <td>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실시</td> <td>14회</td> <td>A</td> </tr> <tr> <td>일자리 창출</td> <td>고용, 취업</td> <td>매출을 올려 일자리를 늘릴 계획</td> <td>2명 고용</td> <td>A</td> </tr> </tbody> </table> <p> ☑ 가이드 :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추진한 사회적성과 활동내용과 실적을 기재하고 그 결과 및 등급을 자체적으로 평가 </p>	구분	내용					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	사례1)					지표	세부목표	추진 활동내용 및 실적	결과	등급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10톤 감축	지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내역 기재	7.5톤 감축	A	공지전 환경정화 운동 5회 (임직원 봉사활동)		2회 실시	C	취약계층 고용창출	관내 취약계층 10명 고용 달성		5명 고용	B	사례2)					지표	세부목표	추진내용	결과	등급	사회공헌 프로젝트	리플릿 무료제작	비영리단체 리플릿 무료 제작건	16회	S	온라인 마케팅 무료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실시	14회	A	일자리 창출	고용, 취업	매출을 올려 일자리를 늘릴 계획	2명 고용	A																																																																													
구분	내용																																																																																																																																				
측정기준 (기업자체 목표 및 등급)	사례1)																																																																																																																																				
	지표	세부목표	추진 활동내용 및 실적	결과	등급																																																																																																																																
	지역사회 환경보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10톤 감축	지표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내역 기재	7.5톤 감축	A																																																																																																																																
		공지전 환경정화 운동 5회 (임직원 봉사활동)		2회 실시	C																																																																																																																																
	취약계층 고용창출	관내 취약계층 10명 고용 달성		5명 고용	B																																																																																																																																
	사례2)																																																																																																																																				
	지표	세부목표	추진내용	결과	등급																																																																																																																																
	사회공헌 프로젝트	리플릿 무료제작	비영리단체 리플릿 무료 제작건	16회	S																																																																																																																																
		온라인 마케팅 무료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실시	14회	A																																																																																																																																
	일자리 창출	고용, 취업	매출을 올려 일자리를 늘릴 계획	2명 고용	A																																																																																																																																

	담당자 (사회적성과 담당자 유무)	담당자 소속(직책)		담당자명	(서명)
	평가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위촉 및 평가)	1. 평가위원 명단			
연번		평가위원 명	소속	구분	
1		홍길동	근로자대표	사내	
2		홍길순	지역대학 교수	사외	
3					
4					
2. 평가위원회 회의록					
평가위원		위원별 의견			서명
홍길동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했음을 확인함			(서명)
홍길순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목표 달성에는 다소 미흡함			(서명)
비고(기타의견)					
	회의일자		장소		
▶ 가이드 : 기업이 추진한 사회적성과 활동내용 및 실적(결과)에 대해 내·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피드백 추진					
※ 상기 서식은 참고용이며, 기업의 자체 양식 활용가능					

3-1.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문화 형성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없는 기업)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2-1	사회 성과
SVI 지표 연계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문화 형성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 문화 형성 노력 등을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등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측정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증빙 자료</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 범위] N.A</p> <p>[데이터 산식] N.A</p>		
점검 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 문화 형성	1단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 문화 형성 활동이 없는 경우
		2단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 문화 형성 활동이 있지만,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3단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조직 내부 문화 형성 활동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0점	50점
			3단계
			100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의 사회적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로, 뮤지컬 공연의 50% 이상은 반드시 창작작품을 공연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환원 노력을 하고 있음 2023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환경 분야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 보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예습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약보정 안경 제조를 위해 신규 채용 시 색약인 우대 *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 유기동물 입양 지원 * 취약계층 고용 의무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목적에 명시한 바대로 취약계층 고용 		

•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내부 문화 형성' 사례

판단요소	근거
사회적가치 실현	고용의무 없는 기업이지만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직원을 위해 모든 출입구를 자동문 설치, 모든 직원이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공간에서 작업, 육체피로 경감을 위해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 공학기구 지원, 휴게 공간 마련
	고령인력 위한 근로 시간 조정, 건강관리 지원(병원 등), 현재 어르신 3명당 1명의 젊은 인력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및 시행
	감정 소모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 지원을 위해 관련 상담 센터와 협약을 통한 지속적 관리
	기업 목적사업 실천을 위한 HACCP 인증 획득,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단체 상해보험 가입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원 배치 및 상담 진행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노력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자 전문성 향상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마련 및시행
	신입직원 배치 전 건강검진 및 파상풍예방접종 실시,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작업환경측정 연 2회 실시, 재난대응 매뉴얼 교육(화재·폭발예방활동), 자위소방대 구성 및 소방서 연2회 소방 훈련 실시를 통해 사업 투입 전 근로자 안전 역량 강화

3-2. 취약계층 고용 및 급여비율 (취약계층 고용 의무 기업)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2-2	사회 성과	주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SVI 지표 연계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 수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고용율과 취약계층 급여비율을 점검 상대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점검 취약계층 급여비율은 조직의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의 급여 차이를 확인으로써,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을 점검 (참고) 취약계층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 직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 취약계층 명부, ▲ 'SVI측정 업무 지침' 상 참고자료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취약계층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취약계층 고용비율 = 직전 회계연도 말 취약계층 수 / 직전 회계연도 말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급여 비율 = (직전 회계연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 직전년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 100</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취약계층 고용비율 (1/2)</td> <td>1단계</td> <td>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1명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이상</td> </tr> <tr> <td rowspan="3">취약계층 급여비율 (1/2)</td> <td>1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이하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취약계층 급여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취약계층 고용비율 (1/2)	1단계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2단계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1명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미만	3단계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이상	취약계층 급여비율 (1/2)	1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2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취약계층 고용비율 (1/2)	1단계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2단계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비율 1명 이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미만																					
	3단계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이상																					
취약계층 급여비율 (1/2)	1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2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60% 초과 ~ 8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취약계층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신청서 작성 예시>																						

- 취약계층 고용비율(2024년 12월말 기준)
 -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 취약계층 평균시급(2024년 12월 기준)
 - *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 *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단위: %, 원)

업종 분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중위값	취약계층 평균시급 중위값	
1	농업, 임업 및 어업(A)	73.3%	11,751
2	제조업(C)	61.5%	11,9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80.0%	12,481
4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48.1%	25,284
5	건설업(F)	57.1%	13,249
6	도매 및 소매업(G)	52.4%	12,673
7	운수 및 창고업(H)	66.7%	13,422
8	숙박 및 음식점업(I)	60.0%	12,289
9	정보통신업(J)	45.7%	12,673
10	부동산업(L)	44.3%	12,667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8.0%	13,326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77.8%	12,964
13	교육 서비스업(P)	50.0%	12,385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75.7%	13,047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42.9%	12,565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60.0%	12,276
전체 사회적기업**		66.2%	12,743

-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중위값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및 지역사회공헌(가)형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임금수준 고려

비고

■참고1 취약계층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참고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0
‘2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1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단서(전문 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는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 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 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

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통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상기업 인증을 받거나 사회통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통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4. 화폐가치로 측정된 주사업 활동의 사회·환경성과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2-3	사회성과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SVI 지표 연계	3.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외부운영의사회적가치 - 생산단계/판매단계/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6.사회적환원노력도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의 금액합산 실적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만들어낸 사회성과를 사회성과인센티브(SPC)방식을 일부 적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며, 제품/서비스성과, 내부공정성과, 외부공정성과, 환경성과를 측정한다 																						
성과 점검	성과 측정 원칙 ①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만을 측정 ②조직이 창출한 성과 중,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측정 ③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표 및 측정식 도출 필요 [데이터 원천] 성과보고서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①제품/서비스성과= 기업이 제공한 현물·할인·기부 금액 총액 ②내부공정성과 = 취약계층 제공 급여 총액 ③환경성과 = 자원절감 총액 + 환경오염 저감 총액 ④외부공정성과 = 취약생산자 추가가격 및 거래기회제공 등 총액																						
점검 기준	사회적가치의 화폐가치 산정액 (1/2)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화폐가치 산정액 비율 (1/2)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5천만원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r> <tr> <td>4단계</td> <td>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td> </tr> <tr> <td>5단계</td> <td>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2억원 이상</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5%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5% 이상 10% 미만</td> </tr> <tr> <td>4단계</td> <td>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10% 이상 15% 미만</td> </tr> <tr> <td>5단계</td> <td>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15% 이상</td> </tr> </table>		1단계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5천만원 미만	3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2억원 이상	1단계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5% 미만	3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4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10% 이상 15% 미만	5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15% 이상
1단계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5천만원 미만																						
3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단계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이 2억원 이상																						
1단계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5% 미만																						
3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5% 이상 10% 미만																						
4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10% 이상 15% 미만																						
5단계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산정액 비율이 15% 이상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사회성과의 화폐가치 산정액 × 1/2 + 매출총이익 대비 사회성과 화폐가치 산정액 비율 ×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사회성과 창출방식에 따른 성과영역별 세부지표>

사회성과 영역	사회성과 창출방식	세부 성과지표
제품/ 서비스 성과	동일제품의 할인/무료 제공	할인무료 제공
	시장배제집단을 위한 특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추가 생산비용 투입을 통한 품질 제고
내부공정 성과	취약계층 고용	직접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및 이직기회 제공	경과성 일자리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돌봄서비스 대체	중증 돌봄 대체
외부공정 성과	소농의 소득 증진	소농거래
	해외 소농의 소득 증진	공정무역 - 농산물
	취약국가 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공정무역 - 비농산물
	취약지역 주민 소득 증진	공정여행 - 해외, 국내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액 증대	크라우드펀딩 - 기부형, 리워드형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증진	고용에 준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형성과 일자리 창출
	취약생산자의 추가 거래 기회 제공	취약생산자와 거래 시 새로운 거래 기회 제공
	신진예술가와 작품 거래	문화예술 자산보호
	공익활동 지원	비영리 조직 지원
	공공예산 효율성 증대	시민자산 형성 및 확대
	취약생산자 소득 증진	취약그룹 불공정 거래 예방
환경성과	자원소비 절감 환경오염 저감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친환경 대체재료
		친환경 프로세스
		생태계 복원력 강화

비고

5.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못한 주사업활동의 사회·환경성과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2-4	사회 성과	주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SVI 지표 연계	3.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외부운영의사회적가치 - 생산단계/판매단계/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6.사회적환원노력도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및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의 금액합산 실적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만들어낸 사회성과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가치지표(SVI) 틀에 맞추어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성과를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기타 사회적가치로 나누어 측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기타 사회적가치) 상기 항목 외에 외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성과 점검	[데이터 원천] 조직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 colspan="3">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미흡하다</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보통이다</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우수하다</td> </tr> <tr> <td>6단계</td> <td colspan="3">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td> </tr> </table>			1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2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3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미흡하다			4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보통이다			5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우수하다			6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		
	1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2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3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미흡하다																										
4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보통이다																										
5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우수하다																										
6단계	사회·환경성과 실현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																										
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d>6단계</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작성 방법> - 외부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의 측면, 분야, 대상, 활동을 설정하고 다음 페이지 사례를 참고하여 내용 기재 * 사회적가치 1) 측면, 2) 활동, 3) 분야, 4) 대상 네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 개의 사례로 인정 * 사례 간 네 가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사례와 분야,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예: 분야와 대상은 같으나 활동이 다를 때) 한 개의 사례로 추가 인정																											
<table border="1"> <tr> <td>측면</td> <td>분야</td> <td>대상</td> <td>활동</td> </tr> </table>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제품 서비스 판매	지역공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서비스 생산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 기타 사례의 경우에도 타 측면의 사례와 명확하게 구분될 때 한 개의 사례로 인정(예: 푸드, 라이프스타일, 지속가능 패션, 폐기물 저감, 탄소배출량 감축 등)

<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사례>

측면	활동	분야	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	소득창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투자, 제품 제작, 환원 및 기부, 인증, 교육, 협력 관련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소득을 창출 ▲고용(사회적 소외계층 포함)과 이를 위한 시설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 제작 및 판매 ▲지역고유의 특산품 및 특징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 ▲수익환원 및 기부활동 (예 : 할인, 무상제공, 수익환원, 배송서비스)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인증을 받은 사례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동 (예 : 판로개척)	환경 교육 경제 건강/보건 안전 기술(테크)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청소년
이용자와 이용자의 지역 개선 관련	지역격차 해소, 기회 및 체험 제공, 환경개선, 취약계층 생활개선, 홍보, 인식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활동, 지역자원 연계, 지역네트워크, 건강보건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지역 문화 격차 해소 ▲지역주민(취약계층 포함) 체험프로그램 제공(문화 포함) ▲지역 고유의 제품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시설 및 생활 환경의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예 : 무료 소득, 주거환경개선) ▲장애인 생활개선(인식개선, 취업, 사회환원사업, 기술교육, 프로그램, 직업재활, 주간보호, 심리상담, 기부) ▲지역 및 지역주민(취약계층 포함) 대상 홍보영상 제작 ▲지역 환경인식개선 활동 및 프로그램 제작 ▲지역 취약계층 무려 교육, 판매, 프로그램 제작 ▲지역사회문제 인지를 통한 미래세대의 인식변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 ▲지역문화 활동의 체험판로 확보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정신건강 포함) ▲지역주민의 자원 연계서비스 활동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복지 인권 문화 도시재생 전통시장 관광 도농교류 저출산	아동 반려동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예술가 지역농가 (복수 가능)

비고

<작성 예시>

※ 측면을 구분하고, '분야',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가. 생산단계

- 이유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구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
-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에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
-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
-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

나. 판매단계

-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
-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
-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
-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다. 이용자

-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적가치 발생

라. 기타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사회적 미션과 핵심 사회적가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안내 가이드>

면담 질문	평가 착안 사항	비고
1. (측면) 기업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가치는 무엇입니까?	○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비전에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2. (분야)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분야는 무엇이며, 왜 그러한 분야에 집중합니까?	○ 기업은 사회의 명확한 문제의식을 통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를 선정하였다.	
	○ 기업이 제시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는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가치 활동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3. (대상) 기업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해 기여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 기업의 사회적가치 활동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분야는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와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4. (활동)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집중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기업의 비전과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대상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 기업은 사업의 영위하는 지역의 사회적가치 대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대상을 선정하였다.	
5. (종합) 기업의 외부활동 관련한 사회적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이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대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사회적가치 활동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 기업의 주/부사업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지속가능성이 있다.	
	○ 기업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잉여자원(인력, 자본)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이용자의 지역개선과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활동, 분야, 대상이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다.	

업종별 측정 사례

<건설업>

- ▲지역 내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30% 할인 시공
- ▲인체에 유해성을 낮추고 부실시공의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00 기술 도입으로 00% 안전성 증대
- ▲지자체 등의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 서비스 00건 제공
- ▲사회주택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모색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무상으로 공사를 시공 00건

<공연/문화/예술/교육>

- ▲공연 창작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저작권 수수료 지급)
- ▲장애인 회원 대상 30% 할인된 가격에 교육 실행
- ▲선도된 위기 청소년이 교육지도자로 양성
- ▲자연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 → 환경보존 의식 고취 및 실행
- ▲지역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설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창출에 기여
- ▲사업진행 시 활용되지 않은 공간/자원을 재생하는 기획사업 진행
- ▲발달장애인 예술가 활성화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 및 판매지원

비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군 장병,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교육 서비스>

- ▲취약계층 대상 무료, 저렴형으로 서비스 제공
- ▲위기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가정을 위한 예방 차원의 교육을 통해 심리안정도 00% 증대
- ▲취약계층(법적보호 치료 청소년과 부모)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극복
- ▲치매관련 사전 교육을 통해 치매 예방률 00% 증대로 사회적 비용 감소
- ▲취약계층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 ▲위기 청소년 선도 및 인성 교육을 통해 학업 안정도 00% 증대
- ▲학교 청소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대상 사전 교육 00회 실시
- ▲지역주민에게 무료 교육 제공(00회) 및 교육기부로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공예품 도소매>

- ▲지역사회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에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기획 제공 00건
- ▲자립준비청년(00명)의 진로체험 활동과 꿈을 찾는 데 기여

<농업, 도소매>

-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 ▲농산물 공급자 간 친환경 농업으로 연대를 통한, 토양살리기 및 미래농업 확대 동참으로 지역 농업 혁신성 강화 및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와 상생, 이용자에 저렴한 가격 서비스 제공
-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 및 농촌 경제 활성화
- ▲중고 배터리를 재사용을 통한 환경 비용 00원 감소
- ▲청년 및 취약계층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조성
- ▲사회적가치 활동을 하는 기업 선정 거래
- ▲환경가치(자투리 가죽, 소방 폐호스의 재사용 등)를 가진 제품을 유통, 전시
- ▲사회적가치 기업들의 판로확장 역할
- ▲로컬푸드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조합원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생산 활동 보장
- ▲매월 잔류농약검사를 통해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

- ▲장애인 생명권 보장 및 가족의 고통 경감
-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창출
-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습 진행 → 어르신 개인의 의료비절감
- ▲이용시간 외 건강기기 무료로 제공
- ▲정기적인 서비스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 ▲후원물품 확보 및 전달로 이용자의 영양 불균형 해소
- ▲요양보호사가 방문 시 밀반찬서비스 제공하여 이용자의 식생활 개선
- ▲돌봄 문제에 대한 해소로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삶의 만족도 향상
- ▲사회 활동 참여와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의 자존감을 높임
-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00 서비스 도입
- ▲서비스 사각지대의 돌봄 영역을 발굴하여 제안 및 모델링
- ▲양질의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
- ▲지역사회 지향형 의료, 건강서비스를 위하여 적정진료, 믿을 수 있는 의료건강 서비스 제공
- ▲진료가 어려웠던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00서비스 제공
-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이 상담서비스에 쉽게 접근
- ▲비정규직 청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탈북 아동 등 사회적응력 회복
-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이 자격획득을 통해 경제활동 경로를 제공

<부동산 관리>

- ▲사회적경제영역 자산화 공동사업 추진
- ▲입주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공동체감 향상을 유도
- ▲환경운동, 자치구 개발 등에 대한 사업 추진
- ▲미래지향적 친환경 주택을 널리 보급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 ▲커뮤니티 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기여

<사업 시설관리>

- ▲냉난방기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한 에너지효율 유지 →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 ▲분해정밀세척을 통한 제품수명 연장효과 → 생활폐기물 절감 → 사회적비용 절감

<숙박 음식업>

- ▲원데이투어 등을 진행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노후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에서 보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및 인식 개선

<여행업>

-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여행상품 개발 00건
- ▲배리어프리 활동을 위한 00 콘텐츠 개발
- ▲장애인 수상휠체어 개발을 통한 해양스포츠 콘텐츠 보급

- ▲관광지 이용 업체 담당자에 대해 장애 인식 개선 활동
- ▲취약계층 할인을 적용

<재활 용품>

- ▲공익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상품 판로 확대
-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의 확산, 어린이 환경교육

<정보통신 사무용품>

- ▲사무용품(종이파일) 판매 시, 자원재활용 종이를 사용
- ▲사회적경제 조직에 할인 혜택
- ▲취약계층 및 관련 기관 시중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에 공급

<제조업>

- ▲원재료인 생두를 공정무역을 통해서 구입
- ▲사회적경제기업일 경우 저렴하게 판매
- ▲생산, 판매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 협력(관산화, 협회 등) 체계 연계
- ▲재고의류 및 기부물품을 재능기부형식의 재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시스템 구축
- ▲폐섬유를 이용한 건축자재 개발
- ▲최상급재료와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하여 식품안정성을 위해 안정성테스트를 시행
- ▲3無 원칙(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물) 제품 섭취로 건강한 먹거리 섭취 가능
-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 라인을 연구 개발하여 출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분야의 해외 수출 증대로 기여
- ▲장애인을 고용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
- ▲재생지 활용, 친환경 타이벡 현수막 등 친환경 인세를 권장함으로써 환경보호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수제썬빵으로 이용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 ▲절전/보안모듈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함께 정보보안의 문제를 해결
-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00% 실현
- ▲배터리 성능을 회복, 사용기간 늘려 환경보호
- ▲70% 이상 재활용 가능한 PC구매를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

<제조업, 서비스업>

- ▲친환경 그래픽 노면 표시재 사용으로 안전한 환경에 기여
- ▲사회·윤리적 가치를 기반, 사회적약자의 안전, 환경을 생각하여 공공디자인을 기반으로 생산
- ▲아동에게 건전한 놀거리 제공, 건강한 신체와 정서발달 기여, 비만 및 학교폭력예방
- ▲재활용 가능한 타이벡 자재를 활용 및 사용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윤리적 가치 실현

<식품 가공>

- ▲수입 농산물이나 타 지역 농산물 소비가 아니라 탄소소비 절감 기여
-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가공품을 만들어 보급

<체험/교육>

- ▲이용자가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와 소양이 높아지고 지역 관심과 애정이 높아짐
- ▲노인의 초기 치매 예방 등의 효과

<출판영상, 방송통신>

- ▲지역 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고용하여 교육시키며 일자리를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렴한 홈페이지제작 및 무료 리플렛 제작
- ▲시장라디오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폐기물처리/원료재생>

- ▲불용 PC를 재조립하여 저가로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에 지원
- ▲재활용 플라스틱 2차 가공 사업으로 환경 보존 기여
- ▲기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자원 재순환 및 저소득층 정보화 사업 지원
-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통해 정보화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

6.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3-1	사회 성과	양질의 노동																												
SVI 지표 연계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을 위한 사회적가치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요건 항목을 중심으로 근로자 보건·안전을 위한 노력도 확인 																														
성과 점검	[데이터 원천]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내역 증빙자료 [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N/A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요건1</td> <td>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진료(국가건강검진 수검은 해당하지 않음) *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td> </tr> <tr> <td>요건2</td> <td>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 기업 자체의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은 실적으로 불인정</td> </tr> <tr> <td>요건3</td> <td>혹서기/혹한기 옥외작업 최소화, 산재예방 지원사업 참여</td> </tr> <tr> <td>요건4</td> <td>근로자 보건 및 안전지침(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td> </tr> <tr> <td>요건5</td> <td>사고 및 재해 등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td> </tr> <tr> <td>요건6</td> <td>정기적 안전점검 여부</td> </tr> <tr> <td>요건7</td> <td>안전용품 비치, 근로자 보험 여부(단 4대 보험 가입은 해당하지 않음)</td> </tr> <tr> <td>요건8</td> <td>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여부</td> </tr> <tr> <td>요건9</td> <td>근로자 안전 또는 위험성 평가 전담인력 배치</td> </tr> <tr> <td>요건10</td> <td>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이와 관련된 근무 기록</td> </tr> <tr> <td>요건11</td> <td>안전 설비 확인 자료, 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록 여부</td> </tr> <tr> <td>요건12</td> <td>안전 관련 용역 인력 구성 및 활용,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td> </tr> <tr> <td>요건13</td> <td>직원의 정서 및 심리 지원</td> </tr> <tr> <td>요건14</td> <td>기타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증빙 서류</td> </tr> </table>			요건1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진료(국가건강검진 수검은 해당하지 않음) *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요건2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 기업 자체의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은 실적으로 불인정	요건3	혹서기/혹한기 옥외작업 최소화, 산재예방 지원사업 참여	요건4	근로자 보건 및 안전지침(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요건5	사고 및 재해 등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	요건6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	요건7	안전용품 비치, 근로자 보험 여부(단 4대 보험 가입은 해당하지 않음)	요건8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여부	요건9	근로자 안전 또는 위험성 평가 전담인력 배치	요건10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이와 관련된 근무 기록	요건11	안전 설비 확인 자료, 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록 여부	요건12	안전 관련 용역 인력 구성 및 활용,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	요건13	직원의 정서 및 심리 지원	요건14	기타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증빙 서류
	요건1	직원 대상 건강검진 유상진료(국가건강검진 수검은 해당하지 않음) * 국가건강검진 이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요건2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 기업 자체의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포함)은 실적으로 불인정																														
요건3	혹서기/혹한기 옥외작업 최소화, 산재예방 지원사업 참여																														
요건4	근로자 보건 및 안전지침(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요건5	사고 및 재해 등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관련 서류																														
요건6	정기적 안전점검 여부																														
요건7	안전용품 비치, 근로자 보험 여부(단 4대 보험 가입은 해당하지 않음)																														
요건8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여부																														
요건9	근로자 안전 또는 위험성 평가 전담인력 배치																														
요건10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여부, 이와 관련된 근무 기록																														
요건11	안전 설비 확인 자료, 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록 여부																														
요건12	안전 관련 용역 인력 구성 및 활용, 중대재해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																														
요건13	직원의 정서 및 심리 지원																														
요건14	기타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증빙 서류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3개 이상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4개 이상인 경우</td> </tr> <tr> <td>6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5개 이상인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d>6단계</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	2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	3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	4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3개 이상인 경우	5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4개 이상인 경우	6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5개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																														
2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																														
3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																														
4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3개 이상인 경우																														
5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4개 이상인 경우																														
6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5개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비고	<p><작성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유상 건강검진 진료 지원 근로자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업무고충 및 심리안정 서비스 지원 																														

7. 고용의 질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3-2	사회	양질의 노동																							
SVI 연계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 고용의 질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친화적 고용정책 수립 및 근로환경 조성 노력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요건 항목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 개선 노력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요건에 해당하는 활동내역 증빙자료</p> <p>[데이터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td>요건1</td><td>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활동</td></tr> <tr><td>요건2</td><td>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학비지원</td></tr> <tr><td>요건3</td><td>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법인 차량 또는 유류비 제공</td></tr> <tr><td>요건4</td><td>단체 상해보험 가입</td></tr> <tr><td>요건5</td><td>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선정</td></tr> <tr><td>요건6</td><td>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td></tr> <tr><td>요건7</td><td>직원 휴게실 설치</td></tr> <tr><td>요건8</td><td>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td></tr> <tr><td>요건9</td><td>기금운영을 통한 직원 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td></tr> <tr><td>요건10</td><td>기타 고용의 질 활동 * 활동이 별도 건일 경우 개별 건별로 요건 충족 산정 *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아래 별도 지표가 있기에 산정하지 않음</td></tr> </table>			요건1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활동	요건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학비지원	요건3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법인 차량 또는 유류비 제공	요건4	단체 상해보험 가입	요건5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선정	요건6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요건7	직원 휴게실 설치	요건8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요건9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 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요건10	기타 고용의 질 활동 * 활동이 별도 건일 경우 개별 건별로 요건 충족 산정 *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아래 별도 지표가 있기에 산정하지 않음				
	요건1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활동																									
요건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학비지원																										
요건3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법인 차량 또는 유류비 제공																										
요건4	단체 상해보험 가입																										
요건5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선정																										
요건6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요건7	직원 휴게실 설치																										
요건8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요건9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 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요건10	기타 고용의 질 활동 * 활동이 별도 건일 경우 개별 건별로 요건 충족 산정 *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아래 별도 지표가 있기에 산정하지 않음																										
	<table border="1"> <tr><td>1단계</td><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td></tr> <tr><td>2단계</td><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td></tr> <tr><td>3단계</td><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td></tr> <tr><td>4단계</td><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3개 이상인 경우</td></tr> <tr><td>5단계</td><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4개 이상인 경우</td></tr> <tr><td>6단계</td><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5개 이상인 경우</td></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d>6단계</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	2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	3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	4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3개 이상인 경우	5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4개 이상인 경우	6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5개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																										
2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																										
3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																										
4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3개 이상인 경우																										
5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4개 이상인 경우																										
6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5개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비고	<p><작성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 																										

8. 여성 고용 및 급여 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4-1	사회 성과	성평등																				
항목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 고용의 질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성별 급여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 •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용 비율과 여성 급여비율 측정 - 여성 급여 비율 : 조직의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과의 급여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 * 여성 급여 비율은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을 점검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직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직전 회계연도 말 급여명세</p> <p>[데이터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산식] 여성 고용비율 = 직전 회계연도 말 여성근로자 수 / 직년 회계연도 말 총 근로자 수</p> <p>여성 급여 비율 = (직전 회계연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 직전 회계연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 100</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여성 고용비율 (1/2)</td> <td>1단계</td> <td>여성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1명 이상 ~ 30%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30% 이상</td> </tr> <tr> <td rowspan="3">여성 급여비율 (1/2)</td> <td>1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90% 이하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p>*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p> <p>= 여성 고용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여성 급여비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여성 고용비율 (1/2)	1단계	여성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2단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1명 이상 ~ 30% 미만	3단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30% 이상	여성 급여비율 (1/2)	1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	2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9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여성 고용비율 (1/2)	1단계	여성 근로자 고용이 없는 경우																					
	2단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1명 이상 ~ 30% 미만																					
	3단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30% 이상																					
여성 급여비율 (1/2)	1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																					
	2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70% 초과 ~ 9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1인 평균 급여액 대비 '여성 1인 평균 급여액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비고																							

9. 성평등을 위한 노력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4-2	사회 성과	성평등																						
SVI 연계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 고용의 질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양성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요건 항목을 중심으로 양성 평등 노력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활동 내역</p> <p>[데이터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요건1</td> <td>여성친화기업 인증</td> </tr> <tr> <td>요건2</td> <td>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시행(조항 또는 내부분서)</td> </tr> <tr> <td>요건3</td> <td>취업규칙 내 일·가정 양립정책 시행(조항)</td> </tr> <tr> <td>요건4</td> <td>취업규칙 내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조항)</td> </tr> <tr> <td>요건5</td> <td>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증빙 서류</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td>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1단계</td> <td style="width: 33%;">2단계</td> <td style="width: 33%;">3단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점</td> </tr> </table>			요건1	여성친화기업 인증	요건2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시행(조항 또는 내부분서)	요건3	취업규칙 내 일·가정 양립정책 시행(조항)	요건4	취업규칙 내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조항)	요건5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증빙 서류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	1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	2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	3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요건1	여성친화기업 인증																									
요건2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시행(조항 또는 내부분서)																									
요건3	취업규칙 내 일·가정 양립정책 시행(조항)																									
요건4	취업규칙 내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조항)																									
요건5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활동 내용 및 증빙 서류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	1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없는 경우																								
	2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1개인 경우																								
	3단계	위 요건과 관련한 활동(증빙서류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비고	<p><신청서 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 																									

10.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5-1	사회 성과	지역사회와 협력																								
SVI 지표 연계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상호협력 활동 수준을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내용 및 협력기관 수를 측정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활동 결과 증빙 서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관련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문건,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협의회 회원사 명단, 협의회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협력활동 관련 계약(협약)서 및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div> <p>* 측정연도(직전연도)에 체결한 양해각서 실적 인정 * 측정연도 이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경우, 측정연도에 실질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p> <p>[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td> </tr> <tr> <td>2단계</td> <td>1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3단계</td> <td>2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4단계</td> <td>3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5단계</td> <td>4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6단계</td> <td>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d>6단계</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1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3단계	2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4단계	3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5단계	4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6단계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단계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1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3단계	2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4단계	3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5단계	4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6단계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비고

• 작성방법

- ①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소셜벤처를 의미하며 협의체는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
 - ②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
 - ③ 협력활동의 인정범위는 기업의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인정**(주 부 사업영역 외 기관 차원의 봉사활동 및 대표자 재능기부 활동 등은 불인정)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 ⑤ 사회적경제기업 간 구매 판매 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양해각서(MOU) 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 납부 내역,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간 컨소시움 및 정기적 네트워크 활동도 협력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000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사회적협동조합	00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분기별 1회
□□사회적기업	장애인 대상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프로그램 진행	연 2회

11.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5-2	사회 성과	지역사회와 협력																								
SVI 지표 연계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의 공공·민간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활동 수준을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부 사업영역과 관련된 지역의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활동 내용 및 협력기관 수를 측정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결과 증빙자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div> <p>[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td> </tr> <tr> <td>2단계</td> <td>1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3단계</td> <td>2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4단계</td> <td>3~4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5단계</td> <td>5~6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r> <td>6단계</td> <td>7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d>6단계</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1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3단계	2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4단계	3~4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5단계	5~6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6단계	7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단계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1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3단계	2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4단계	3~4개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5단계	5~6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6단계	7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비고

• 작성방법

- ①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 ②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 포괄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 ③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함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 ⑤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구매·판매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 ※ 참고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은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에 포함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의 비경제적 분야에서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협력활동은 인정합니다.
 -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 사업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000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협력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사회적협동조합	00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분기별 1회
□□사회적기업	장애인 대상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프로그램 진행	연 2회

12. 근로자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개선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6-1	사회 성과	사회 환원																
항목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조직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구성원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유무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점검 •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비, 근로자 성과급,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점검 ① 복리후생비 :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유회 경비, 경조사비, 통근 차량 제공에 따른 비용, 창립기념일/명절/생일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물 비용 등 * 보건건강(유상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비용은 본 실적에서 제외(앞의 지표에서 측정됨) ② 근로자 성과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지급 내역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상 명기되지 않은 인센티브 내역만 인정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상여금 불인정 ③ 시설투자비(1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등 근로자의 직접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단순 소모성 제품구입이나 사업운영을 위한 구매 내역 불인정)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복리후생비, 근로자 성과급, 시설투자비 증빙 자료</p> <p>① 복리후생비 :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p> <p>② 근로자 성과급 :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p> <p>③ 시설투자비 :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 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세 가지 항목 모두 내역이 없을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세 가지 항목 중 1개 내역만 있을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세 가지 항목 중 2개 내역만 있을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세 가지 항목 중 3개 내역이 모두 있을 경우</td> </tr> </table> <p>*단 상황에 따라 전체 측정 결과의 분포 구간으로 사후 측정 가능함</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1단계</td> <td style="width: 25%;">2단계</td> <td style="width: 25%;">3단계</td> <td style="width: 25%;">4단계</td> </tr> <tr> <td>0점</td> <td>33점</td> <td>66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세 가지 항목 모두 내역이 없을 경우	2단계	세 가지 항목 중 1개 내역만 있을 경우	3단계	세 가지 항목 중 2개 내역만 있을 경우	4단계	세 가지 항목 중 3개 내역이 모두 있을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33점	66점	100점
1단계	세 가지 항목 모두 내역이 없을 경우																		
2단계	세 가지 항목 중 1개 내역만 있을 경우																		
3단계	세 가지 항목 중 2개 내역만 있을 경우																		
4단계	세 가지 항목 중 3개 내역이 모두 있을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33점	66점	100점																
비고	<p><작성 방법></p> <p>① 복리후생비-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지급, 통근차량 제공</p> <p>② 구성원 성과급- '23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p> <p>③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p>																		

13. 구성원 봉사참여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6-2	사회 성과	사회 환원																				
SVI 연계 지표	6. 사회적환원 노력도 - 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주사업영역 외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봉사 및 재능기부 내역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주요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인력·시간)을 활용한 내역(봉사활동·재능기부 등)유무와 수준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결과 자료(활동 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자료 일체)</p> <p>[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p> <p>[데이터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1회 제공한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1회 제공한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2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1회 제공한 경우	3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4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1회 제공한 경우	5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활용한 내역이 없는 경우																						
2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1회 제공한 경우																						
3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4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1회 제공한 경우																						
5단계	조직의 비금전적 자원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비고																							

14. 근로자 임금 수준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7-1	사회 성과	일자리 창출																				
SVI 연계 지표	8. 근로자 임금 수준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근로자 지향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수준을 대표 지표로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종업종의 시급 대비 유급근로자 평균시급의 분포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년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시점(직전년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직전년도 12월 기준 임금대장 및 근로자의 총 급여지급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시점(직전년도 12월)의 총 유급근로자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근무시간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 가능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대상 시점(직전년도 12월) 총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p>[데이터기간] 직전년도</p> <p>[데이터범위] 국내 사업장</p> <p>[데이터산식] 근로자 12월 총 급여(임금대장 상 지급내역 확인) ÷ 12월 총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역 확인)</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 rowspan="5">근로자 임금 수준</td> <td>1단계</td> <td>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미만</td> </tr> <tr> <td>2단계</td> <td>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td> </tr> <tr> <td>3단계</td> <td>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td> </tr> <tr> <td>4단계</td> <td>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td> </tr> <tr> <td>5단계</td> <td>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80% 이상</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근로자 임금 수준	1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미만	2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3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4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5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80%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근로자 임금 수준	1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미만																						
	2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3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4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5단계	근로자 평균 시급이 동종업종 근로자 시급 분포의 80%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총 유급근로자의 평균 시급을 작성합니다.

<기업 작성예시>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원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원/시간	

※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단위: 원) 산식
 = 근로자 12월 총 급여(임금대장 상 지급내역 확인) ÷ 12월 총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기재 내역 확인)

※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산식
 = 전체 근로자 수 x 근로자별 일 근무시간 x 직전년도 12월달 근무일 수
 = Σ근로자별 주 근무시간 x 4.34
 * 1년 평균 52.1주를 기준으로, 월 평균 4.34주로 산정
 (계산 예시) 전체 근로자 수 총 5명(주 40시간 4명/ 주 35시간 1명)일 경우,
 (40시간* 4.34*4명) + (35시간*4.34*1명) = 846.3시간

비고

- ①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 직전년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총 급여 (단위 : 원)
- ②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 직전년도 12월 기준의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
- ③ 기업 업종분류는 [부록] 내 '참고자료 1' 참고(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측정)
- ④ 업종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평균 수준은 [부록] 내 '참고자료 4'를 참고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월급 기준: 2,096,270원)

- ⑤ 총 급여는 직전년도 12월말 고용보험내역, 임금대장 등을 참고하여 세전기준의 총 급여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⑥ 총 근무시간은 직원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근무시간□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제시된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작성사례>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급여(a)	전체 유급근로자 12월 총 근무시간(b)
37,239,200원	3,532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a÷b)
10,543원/시간	

[참고자료]근로자 시급 수준

(단위: 원)

주업종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A)	11,582 미만	11,582 이상 11,674 미만	11,674 이상 12,289 미만	12,289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제조업(C)	11,582 미만	11,582 이상 12,097 미만	12,097 이상 14,174 미만	14,174 이상 18,225 미만	18,225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2,097 미만	12,097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15,921 미만	15,921 이상 19,750 미만	19,750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16,262 미만	16,262 이상 24,743미만	24,743 이상 29,969 미만	29,969 이상 39,655 미만	39,655 이상
건설업(F)	11,871 미만	11,871 이상 13,249 미만	13,249 이상 14,977 미만	14,977 이상 18,433 미만	18,433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11,870 미만	11,870 이상 12,855 미만	12,855 이상 14,742 미만	14,742 이상 17,860 미만	17,860 이상
운수 및 창고업(H)	11,636 미만	11,636 이상 12,142 미만	12,142 이상 16,129 미만	16,129 이상 19,724 미만	19,724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11,636 미만	11,636 이상 12,245 미만	12,245 이상 13,631 미만	13,631 이상 16,008 미만	16,008 이상
정보통신업(J)	12,097 미만	12,097 이상 13,249 미만	13,249 이상 15,121 미만	15,121 이상 20,057 미만	20,057 이상
부동산업(L)	12,289 미만	12,289 이상 14,008 미만	14,008 이상 15,956 미만	15,956 이상 19,009 미만	19,009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2,133 미만	12,133 이상 14,401 미만	14,401 이상 16,417 미만	16,417 이상 21,324 미만	21,324 이상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11,636 미만	11,636 이상 12,677 미만	12,677 이상 14,069 미만	14,069 이상 16,643 미만	16,643 이상
교육 서비스업(P)	11,820 미만	11,820 이상 12,757 미만	12,757 이상 14,323 미만	14,323 이상 17,667 미만	17,667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1,587 미만	11,587 이상 12,579 미만	12,579 이상 13,549 미만	13,549 이상 15,702 미만	15,702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1,636 미만	11,636 이상 12,289 미만	12,289 이상 13,825 미만	13,825 이상 16,475 미만	16,475 이상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1,582 미만	11,582 이상 12,097 미만	12,097 이상 13,057 미만	13,057 이상 15,186 미만	15,186 이상
전체 사회적기업	11,636 미만	11,636 이상 12,650 미만	12,650 이상 14,169 미만	14,169 이상 17,446 미만	17,446 이상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평균값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15.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7-2	사회	양질의 노동										
SVI 연계 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6. 사회적환원 노력도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교육훈련비 유무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미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구성원 수 기반의 1인당 교육훈련비와 교육훈련 시간을 점검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가. 필수자료 - 2024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동일기준의 총 유급근로자 명부) - 교육시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교육 수료증, 자격 이수증, 교육 참석사진 등) 나. 선택자료 - 교육과정별 결과보고(기업 자체양식 활용가능) * 자체양식 활용 시, 1)교육수혜자수, 2)교육시간 항목 포함필수(1인당 교육시간 산정) - 교육 결과보고서(양식 참조) * 내부교육 시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을 참고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p> <p>[데이터 기간] 직전년도 [데이터 범위] 국내 사업장 [데이터 산식] 1인당 교육훈련비 = 직전년도 교육훈련지출비용 / 직전년도말 총구성원 수 1인당 교육시간 = 직전년도 교육훈련 총시간 / 직전년도말 총 구성원 수</p>												
점검 기준	교육 훈련비 (1/2)	1단계	금전적 교육비 지원 내역이 없음										
		2단계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단계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인 경우											
4단계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											
5단계		1인당 교육훈련비 제공내역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교육 시간 (1/2)		1단계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3단계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인 경우										
		4단계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인 경우										
		5단계	1인당 교육훈련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교육훈련비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교육시간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thead> <tr> <th>1단계</th> <th>2단계</th> <th>3단계</th> <th>4단계</th> <th>5단계</th> </tr> </thead> <tbody>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body> </table>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비고

<작성 방법>

①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시간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 당 교육시간 (D) =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정 의무 교육 외		지표 10번			
		‘고용성과’			
		실적으로 기재			
		(’24년 유급 근로자 수)			
합계(연평균 1인 당 교육시간)					

① 아래의 법정 의무교육은 기업 의무사항□므로 제외되며, 직무·사업영역과 관련성□ 적은 교육의 기재는 지양합니다.

※ 법정 의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

② 직무와 관련된 업종별 의무교육은 실적 인정합니다.

* 예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③ 교육과정: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및 출장 교육 외 내부 교육도 인정 가능합니다. (증빙필요)

* 내부: 경력자(선임자 등)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 / 외부: 전문가 초빙·수강을 통한 교육

④ 전체 근로자 수 : 2024년 12 월 기준의 전체 유급근로자 수(대표자는 제외)로 일괄 적용됩니다.

⑤ 근로자 1인당 1개의 교육과정 최대 교육인정시간은 50시간 내로 제한합니다.

⑥ 특정 교육과정의 수혜자 수가 2024년 유급근로자 수보다 많은 경우, 교육 수혜자 수는 2024년 유급근로자 수로 작성합니다.

<작성방법>

교육		전체 근로자 수 (A)	교육 수혜자 수 (B)	교육 시간 (C)	1인당 교육시간 (D) =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정 의무 교육 외	내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명	5명	5H	1.25
	외부 회계교육		3명	5H	0.75
	내부교육(노인성 치매관련)		10명	5H	2.5
	외부 간병서비스 교육		15명	5H	3.75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8.25

② 교육비 지출 내역

교육 내역	지출 금액
합계	

⑦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출한 `24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 기업의 신문 및 잡지구독료는 제외

16.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7-3	사회 성과	일자리 창출																																																				
SVI 연계 지표	10. 고용성과 - 고용성장률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유급근로자 수와 고용성장률을 동종업종의 측정 지표 대비 수준 비교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2개년 회계연도 말 고용보험내역, 고용인원, 기타 증빙 제출 자료 * 예 : 2025년 측정 시 2024년 12월, 2023년 12월 말 고용보험내역</p> <p>[데이터기간] 최근 2개 회계연도</p> <p>[데이터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p> <p>[데이터산식] $\text{고용성장률} = (\text{직전 2개년 총 근로자수} - \text{직전 1개년 총 근로자수}) / \text{직전 1개년 총 근로자수} \times 100\%$</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유급 근로자 수 (1/2)</td> <td>1단계</td> <td colspan="3">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20%미만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20% 이상 ~ 40% 미만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40% 이상 ~ 60% 미만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60% 이상 ~ 80% 미만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80% 이상인 경우</td> </tr>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고용 성장률 (1/2)</td> <td>1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인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동일한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10% 미만으로 성장한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10% 이상 20% 미만으로 성장한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 colspan="3">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고용인원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고용성장률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유급 근로자 수 (1/2)	1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20%미만인 경우			2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20% 이상 ~ 40% 미만인 경우			3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40% 이상 ~ 60% 미만인 경우			4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6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5단계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80% 이상인 경우			고용 성장률 (1/2)	1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인 경우			2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동일한 경우			3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10% 미만으로 성장한 경우			4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10% 이상 20% 미만으로 성장한 경우			5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유급 근로자 수 (1/2)	1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20%미만인 경우																																																					
	2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20% 이상 ~ 40% 미만인 경우																																																					
	3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40% 이상 ~ 60% 미만인 경우																																																					
	4단계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 대비 6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5단계	고용성과가 동종업종 대비 80% 이상인 경우																																																					
고용 성장률 (1/2)	1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인 경우																																																					
	2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동일한 경우																																																					
	3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10% 미만으로 성장한 경우																																																					
	4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10% 이상 20% 미만으로 성장한 경우																																																					
	5단계	전년대비 고용성장률이 20%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작성방법>

- 최근 2년간의 유급근로자 수 및 직전년도와의 비교한 고용성장률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

(단위: 명,%)

직전년도 총 유급근로자수(a)	전전년도 총 유급근로자수(b)
명	명
고용 성장률 $[(a-b) \div b] \times 100$	
원/시간	

비고

① 직전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a):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직전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② 전전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b): 전전년도 12월말 기준의 유급근로자 수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전전년 고용보험내역(12월말 기준) 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③ 고용성장률: 전전년 고용인원 수 대비 직전년 고용인원 성장지수 기재합니다.

$$\text{고용성장률(\%)} = \frac{\text{전년도 총 유급근로자수(a)} - \text{전전년도 총 유급근로자수(b)}}{\text{전전년도 총 유급근로자수(b)}} \times 100$$

*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반드시 ‘(-)’를 확인(성장률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④ 유급근로자수는 각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이며, 고용보험내역에 등재 인원만 인정됩니다.

※ 유급근로자 범위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대표자는 제외)

- 상시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해당

-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⑤ 측정 대상년도(2024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고용 성장률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란에 “신규”로 기재합니다.

[참고자료] 고용성과-유급근로자 수(소기업용)

(단위: 명)

주업종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A)	3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5 이상 8 미만	8 이상
제조업(C)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11 미만	11 이상 21 미만	21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2 미만	2 이상 5 미만	2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4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12 미만	12 이상 22 미만	22 이상
건설업(F)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0 미만	10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3 미만	이상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11 미만	11 이상
운수 및 창고업(H)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이상 13 미만	13 이상 24 미만	24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3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정보통신업(J)	3 미만	이상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9 미만	9 이상
부동산업(L)	2 미만	2 이상 5 미만	이상 미만	6 이상 10 미만	10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8 미만	8 이상 13 미만	13 이상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3 미만	13 이상 26 미만	26 이상
교육 서비스업(P)	2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 미만	4 이상 7 미만	7 이상 14 미만	14 이상 25 미만	25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2 미만	이상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8 미만	8 이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1 미만	11 이상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회적기업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9 미만	9 이상 21 미만	21 이상
----------	------	--------------	--------------	---------------	-------

※※ 2개의 구간(등급)의 기준이 동일한 경우, 높은 등급으로 측정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5개 분야)

- 광업(B), 금융 및 보험업(K),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참고자료] 고용성과-유급근로자 수(중기업용)

(단위: 명)

주업종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제조업(C)	25 미만	25 이상 34 미만	34 이상 46 미만	46 이상 63 미만	63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7 미만	37 이상 40 미만	40 이상 44 미만	44 이상 54 미만	54 이상
도매 및 소매업(G)	9 미만	9 이상 23 미만	23 이상 43 미만	43 이상 60 미만	60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I)	14 미만	14 이상 25 미만	25 이상 41미만	41 이상 71 미만	71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23 미만	23 이상 43 미만	43 이상 48 미만	48 이상 60 미만	60 이상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60 미만	60 이상 124 미만	124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62 미만	362 이상
교육 서비스업(P)	9 미만	9 이상 12 미만	1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7 미만	27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7 미만	37 이상 60 미만	60 이상 94 미만	94 이상 237 미만	237 이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6 미만	이상 미만	17 이상 23 미만	23 이상 29 미만	29 이상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2 미만	12 이상 17 미만	17 이상 19 미만	19 이상 43 미만	43 이상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적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회적기업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9 미만	9 이상 21 미만	21 이상
----------	------	--------------	--------------	---------------	-------

* 업종 내 사회적기업 부재 또는 부족으로 등급별 구간 산출이 불가능한 업종(11개 분야)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건설업(F), 운수 및 창고업(H),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17. 정규직 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1-7-4	사회 성과	일자리 창출																				
SVI 연계 지표	10. 고용성과 - 고용성장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확대가 조직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조직이 정규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 증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전체 인력 대비 정규직 비율을 점검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근로계약서, 근로자대장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데이터 산식] 정규직 비율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 수 -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해당연도 말 기준 총 근로자</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단계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현황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3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40% 초과 60% 이하인 경우																						
4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60% 초과 80% 이하인 경우																						
5단계	조직의 정규직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비고																							

18.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2-1-1	거버넌스 성과	참여적 의사결정																				
SVI 연계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근로자·사외이사 등의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측 인사와 사외이사(이해관계자 포함) 등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실제 참여한 비율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또는 운영위원회 등 구성원 명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관련 직전년도 회의록 및 참여자 명부(서명)</p> <p>[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p> <p>[데이터범위] N/A</p> <p>[데이터산식] [(사외이사 + 근로자 인사 + 조합원) / 총 참가지원] × 100 (%)</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1단계</td> <td>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 초과 ~ 40%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60% 이상</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	3단계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 초과 ~ 40% 미만	4단계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	5단계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60%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																						
3단계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 초과 ~ 40% 미만																						
4단계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40% 이상 ~ 60% 미만																						
5단계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60%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비고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별 회의 일자 및 참석인원 수, 회의 결과 공유 여부를 기재합니다. (회의실적은 회계연도 내 기소 반기별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를 의결하는 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합니다.(주주총회 및 직원총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참가비율은 개별회의의 비율평균이 아닌 각 항목의 모든 참가인원 수를 합한 후 합계에 대한 참가 비율로 산출합니다.

-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감사는 총 참가인원에만 해당

비율산출식:	사외이사 + 근로자인사 + 조합원
	사외이사 + 근로자인사 + 조합원 + 대표이사 + 근로자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 감사

③ 각 항목의 구체적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결정기구: 운영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이사회 등)
- 회의 참여인원: 해당 의사결정기구 회의에 참석한 총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외이사: 해당 회의일자에 참여한 사외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근로자인사: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근로자 대표(이사) 수를 기재합니다.
- 조합원: 해당 회의일지에 참여한 조합원 수를 기재합니다.

④ 사외이사, 근로자대표(이사), 조합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사내이사, 감사는 등기부등본 상 등재가 원칙이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출동의서, 위원명부, 조합원 명단 등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

<작성사례>

의사 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외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이사회 or 운영위원회 1개만 기재	3.13	O	5	1	1	-
	4.17	O	6	1	1	-
	7.17	X	5	1	1	-
	10.23	X	6	1	1	-
합계		2	22	4	4	-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36.4% $\{(4 + 4) \div 22\} \times 100(\%) = 36.3636... \rightarrow 36.4\%$
회의결과 공유 비율	50% $(2 / 4) \times 100(\%) = 50\%$

19. 회의 결과 공유 비율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2-1-2	거버넌스 성과	이사회 구성 및 활동																																						
SVI 연계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결과를 임직원에게 공유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있는지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비율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어원]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 임직원 교육 사진 등 회의결과의 임직원 대상 공유 여부 증빙자료</p> <p>[데이터어기간] 직전 회계연도</p> <p>[데이터어범위] N/A</p> <p>[데이터어산식]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횟수 /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 100 (%)</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td> </tr> <tr> <td>2단계</td> <td>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0%</td> </tr> <tr> <td>3단계</td> <td>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0% 초과 ~ 50% 미만</td> </tr> <tr> <td>4단계</td> <td>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이상</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r> <tr> <td>0점</td> <td>33점</td> <td>66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0%	3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0% 초과 ~ 50% 미만	4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33점	66점	100점																							
1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2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0%																																									
3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0% 초과 ~ 50% 미만																																									
4단계	주요 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33점	66점	100점																																							
비고	<p>작성사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의사결정기구</th> <th>회의 일자</th> <th>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th> <th>회의 참여인원</th> <th>사원 이사</th> <th>근로자 인사</th> <th>조합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이사회 or 운영위원회 1.2.3.4차</td> <td>3.13</td> <td>○</td> <td>8</td> <td>1</td> <td>1</td> <td>-</td> </tr> <tr> <td>4.17</td> <td>○</td> <td>8</td> <td>1</td> <td>1</td> <td>-</td> </tr> <tr> <td>7.17</td> <td>○</td> <td>5</td> <td>1</td> <td>1</td> <td>-</td> </tr> <tr> <td>10.27</td> <td>○</td> <td>8</td> <td>1</td> <td>1</td> <td>-</td> </tr> <tr> <td>합계</td> <td></td> <td>4</td> <td>27</td> <td>4</td> <td>4</td> <td>-</td> </tr> </tbody> </table> <p>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frac{27}{69} = 39\%$ $\frac{27}{69} = 39\% > 25\%$ (100%) = 39.30% → 39.3%</p> <p>회의결과 공유 비율: $\frac{4}{8} = 50\%$ $\frac{4}{8} = 50\% > 30\%$ (100%) = 50%</p>			의사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원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이사회 or 운영위원회 1.2.3.4차	3.13	○	8	1	1	-	4.17	○	8	1	1	-	7.17	○	5	1	1	-	10.27	○	8	1	1	-	합계		4	27	4	4	-
의사결정기구	회의 일자	회의결과 임직원 공유 여부	회의 참여인원	사원 이사	근로자 인사	조합원																																				
이사회 or 운영위원회 1.2.3.4차	3.13	○	8	1	1	-																																				
	4.17	○	8	1	1	-																																				
	7.17	○	5	1	1	-																																				
	10.27	○	8	1	1	-																																				
합계		4	27	4	4	-																																				

20. 이사 전문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2-1-3	거버넌스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항목	이사 전문성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조직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외이사가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점검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대분류(2자리 코드) 기준 동종산업에서 업무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 비율을 측정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사외이사 경력사항 [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1단계</td> <td style="width: 33%;">2단계</td> <td style="width: 33%;">3단계</td> </tr> <tr> <td>0점</td> <td>5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2단계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	3단계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1단계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2단계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1명인 경우														
3단계	동종 산업 경력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비고															

21. 전체 이사 출석률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2-1-4	거버넌스 성과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항목	7.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 의사결정 참여 비율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검토/심의/의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사회 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제언, 주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 •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원별 출석율을 평균하여, 전체 이사 출석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점검 - 직전 회계연도에 개최한 이사회에 대해, 개별 이사의 참석률을 평균하여 측정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회 회의록 등</p> <p>[데이터기간] 직전 회계연도</p> <p>[데이터범위] N/A</p> <p>[데이터산식]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 = (출석한 전체 이사 인원 수 / 전체 이사 정원) / 이사회 개최 횟수</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출 석 율</td> <td>1단계</td> <td>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미만으로 개최한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60% 미만인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60% 이상~80% 미만인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개 최 수</td> <td>1단계</td> <td>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미만으로 개최한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개최한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직전년도 이사회를 연3회 개최한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직전년도 이사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한 경우</td> </tr> </table>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p>*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해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출석율 기준에 따른 점수 × 1/2 + 개최수 기준에 따른 점수 × 1/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r> <tr> <td>0점</td> <td>33점</td> <td>66점</td> <td>100점</td> </tr> </table>			출 석 율	1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미만으로 개최한 경우	2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60% 미만인 경우	3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60% 이상~80% 미만인 경우	4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개 최 수	1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미만으로 개최한 경우	2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개최한 경우	3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3회 개최한 경우	4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한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33점	66점	100점
출 석 율	1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미만으로 개최한 경우																											
	2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60% 미만인 경우																											
	3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60% 이상~80% 미만인 경우																											
	4단계	이사회 구성원 평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개 최 수	1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미만으로 개최한 경우																											
	2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2회 개최한 경우																											
	3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3회 개최한 경우																											
	4단계	직전년도 이사회를 연4회 이상 개최한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점	33점	66점	100점																										
비고																													

2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scope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3-1-1	환경 성과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SVI 연계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기타 14. 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 절약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소유, 관리, 통제하는 물리적 경계(사업장 등) 내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1 & Scope2)을 감축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이 직접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및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 																						
성과 점검	<p>지난 3년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측정</p> <p>[데이터 원천] 전기사용량 - 한전온 홈페이지 https://online.kepco.co.kr/ 또는 한전파워플래너 앱 설치 후 조회 가스사용량 - 강원도시가스 홈페이지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또는 강원도시가스 카카오톡채널추가 후 최근 사용량 조회 가능 수도사용량 -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트 http://waterpay.chuncheon.go.kr/waterpay/ncoe/index.do 에서 확인 가능</p> <p>[데이터 기간] 최근 3개 회계연도 [데이터 범위] 국내외 사업장 및 기타 연결실체 [데이터 산식] N/A</p>																						
점검 기준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td> </tr> <tr> <td>2단계</td> <td>직전 1년 재생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d>3단계</td> <td>직전 3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r> <td>4단계</td> <td>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td> </tr> <tr> <td>5단계</td> <td>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td> </tr> </table> <p>*이후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원단위(사용량/매출액)로 환산하여 적용 가능</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r> <tr> <td>0점</td> <td>25점</td> <td>50점</td> <td>75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직전 1년 재생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직전 3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4단계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	5단계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단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직전 1년 재생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3단계	직전 3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리(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4단계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변동 없는 경우																						
5단계	지난 3개년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비고																							

23. 기타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을 위한 활동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3-1-3	환경 성과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SVI 연계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 - 기타 14. 혁신노력도 - 혁신의 결과 - 자원절감 / 환경보호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이나 자원절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 •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이나 자원절약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점검 • 기타 기업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점검 																										
성과 점검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하고, 관리하고,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환경적 가치 항목만 기재 [데이터원천]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활동 결과 보고 [데이터기간] 직전 회계년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단계</td> <td>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td> </tr> <tr> <td>2단계</td> <td>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td> </tr> <tr> <td>3단계</td> <td>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미흡하다</td> </tr> <tr> <td>4단계</td> <td>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보통이다</td> </tr> <tr> <td>5단계</td> <td>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우수하다</td> </tr> <tr> <td>6단계</td> <td>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td> </tr> </table> <p>*측정자가 세부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경오염 저감 활동을 했다(output)를 넘어서서 이 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outcome)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평가</p> <p>점검 기준 적용방안(단계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1단계</td> <td>2단계</td> <td>3단계</td> <td>4단계</td> <td>5단계</td> <td>6단계</td> </tr> <tr> <td>0점</td> <td>20점</td> <td>40점</td> <td>60점</td> <td>80점</td> <td>100점</td> </tr> </table>			1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2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3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미흡하다	4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보통이다	5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우수하다	6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1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2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3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미흡하다																										
4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보통이다																										
5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우수하다																										
6단계	환경오염 및 자원절감 활동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0점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비고																											

24. 매출 성과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4-1-1	경제 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SVI 연계 지표	11. 매출 성과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을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업종 대비 총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직전 2년치 재무제표(예 : 2025년 측정 시 2023년, 2024년 재무제표)</p> <p>[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년도</p> <p>[데이터 범위] N/A</p> <p>[데이터 산식] 매출액 성장률(%)</p> $= [(2024년 매출액(a) - 2023년 매출액(b)) / 2023년 매출액(b)] \times 100$																																						
점검 기준	<p><SVI 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h>등급</th> <th>점수</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매출액</td> <td rowspan="5">6점</td> <td>S</td> <td>6점</td> <td>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td> </tr> <tr> <td>A</td> <td>4.8점</td> <td>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td> </tr> <tr> <td>B</td> <td>3.6점</td> <td>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td> </tr> <tr> <td>C</td> <td>2.4점</td> <td>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td> </tr> <tr> <td>D</td> <td>1.2점</td> <td>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td> </tr> <tr> <td rowspan="4">매출액 성장률</td> <td rowspan="4">4점</td> <td>A</td> <td>4점</td> <td>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td> </tr> <tr> <td>B</td> <td>3점</td> <td>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td> </tr> <tr> <td>C</td> <td>2점</td> <td>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td> </tr> <tr> <td>D</td> <td>1점</td> <td>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td> </tr> </tbody> </table>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매출액	6점	S	6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A	4.8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3.6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4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2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매출액 성장률	4점	A	4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3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매출액	6점	S	6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A	4.8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3.6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4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2점	총 매출액이 동종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매출액 성장률	4점	A	4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3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점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비고	<p>작성방법</p> <p>최근 2년치(2023년, 2024년)의 매출액 및 매출액 성장률을 산정시 당사에 차기 기재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인용사 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2024년도 매출액 (a)</th> <th colspan="2">2023년도 매출액 (b)</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 성장률 $(\frac{a-b}{b}) \times 100\%$</td> </tr> </tbody> </table> <p>① 매출액만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는 점에 유의합니다. * 동일사업: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p> <p>② 매출액 성장률: 2023년 매출액 대비 2024년 매출액 성장치도 기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 성장률 (%) = $\frac{2024년 매출액(a) - 2023년 매출액(b)}{2023년 매출액(b)} \times 100$</p> <p>* 매출액 성장률이 1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1~7을 확인사항들의 소수점 소위까지 기재</p> <p>③ 특정 대상의 2023년에 설립된 신규기업의 경우, 매출액 성장률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에 "신규"로 기재합니다.</p> </div> <p>작성사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2024년도 매출액 (a)</th> <th colspan="2">2023년도 매출액 (b)</th> </tr> </thead> <tbody> <tr> <td></td> <td>872,000,127원</td> <td></td> <td>400,000,123원</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매출액 성장률 $(\frac{a-b}{b}) \times 100\%$</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18.0%</td> </tr> </tbody> </table> <p>* 매출액 성장률 산출 $= [(872,000,127원 - 400,000,123원) \div 400,000,123원] \times 100\% = 218\%$</p>			2024년도 매출액 (a)		2023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frac{a-b}{b}) \times 100\%$				2024년도 매출액 (a)		2023년도 매출액 (b)			872,000,127원		400,000,123원	매출액 성장률 $(\frac{a-b}{b}) \times 100\%$				218.0%											
2024년도 매출액 (a)		2023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frac{a-b}{b}) \times 100\%$																																							
2024년도 매출액 (a)		2023년도 매출액 (b)																																					
	872,000,127원		400,000,123원																																				
매출액 성장률 $(\frac{a-b}{b}) \times 100\%$																																							
218.0%																																							
비고																																							

<매출액 성과 : 소기업용>

주요종	단위: 백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영업 이익 및 이익률	152,811,754 회전	152,811,754 회 218,442,868 회	218,442,868 회 414,182,211 회	414,182,211 회 1,124,989,000 회	1,124,989,000 회 회
채무비율	346,347,219 회	346,347,219 회 602,416,414 회	602,416,414 회 1,300,821,880 회	1,300,821,880 회 2,284,236,190 회	2,284,236,190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53,399,239 회	353,399,239 회 382,211,073 회	382,211,073 회 1,118,278,770 회	1,118,278,770 회 1,984,762,754 회	1,984,762,754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07,322,587 회	307,322,587 회 309,613,939 회	309,613,939 회 1,389,082,636 회	1,389,082,636 회 1,888,795,299 회	1,888,795,299 회 회
채무비율	487,419,881 회	487,419,881 회 117,623,717 회	117,623,717 회 1,133,981,138 회	1,133,981,138 회 1,751,771,289 회	1,751,771,289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12,798,922 회	212,798,922 회 476,782,181 회	476,782,181 회 968,957,688 회	968,957,688 회 1,596,228,489 회	1,596,228,489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446,217,387 회	446,217,387 회 487,927,219 회	487,927,219 회 1,118,278,770 회	1,118,278,770 회 2,284,236,190 회	2,284,236,190 회 회
채무비율	382,282,174 회	382,282,174 회 487,927,219 회	487,927,219 회 1,118,278,770 회	1,118,278,770 회 2,284,236,190 회	2,284,236,190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158,216,142 회	158,216,142 회 324,232,922 회	324,232,922 회 947,887,933 회	947,887,933 회 1,888,795,299 회	1,888,795,299 회 회
채무비율	197,228,217 회	197,228,217 회 387,981,823 회	387,981,823 회 919,470,867 회	919,470,867 회 1,888,795,299 회	1,888,795,299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18,187,848 회	218,187,848 회 486,383,888 회	486,383,888 회 1,274,088,583 회	1,274,088,583 회 회	1,274,088,583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03,130,234 회	303,130,234 회 175,088,029 회	175,088,029 회 276,922,739 회	276,922,739 회 493,217,488 회	493,217,488 회 회
채무비율	152,811,754 회	152,811,754 회 303,130,234 회	303,130,234 회 486,383,888 회	486,383,888 회 1,274,088,583 회	1,274,088,583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119,742,889 회	119,742,889 회 306,734,029 회	306,734,029 회 436,171,893 회	436,171,893 회 796,368,177 회	796,368,177 회 회
채무비율	306,295,796 회	306,295,796 회 812,411,826 회	812,411,826 회 1,300,821,880 회	1,300,821,880 회 회	1,300,821,880 회 회

* 상기 값을 분류해 제시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회기업	152,811,754 회	152,811,754 회 303,130,234 회	303,130,234 회 486,383,888 회	486,383,888 회 1,274,088,583 회	1,274,088,583 회 회
---------	------------------	--------------------------------	--------------------------------	----------------------------------	----------------------

* 업종 내 사회기업 단위 또는 부속으로 분류된 구간 선물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경영권,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주거 내 교통통신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가 소액 법인합계업, 국제 및 외국기업업

<매출액 성과 : 중기업용>

주요종	단위: 백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영업 이익 및 이익률	152,811,754 회	152,811,754 회 318,822,368 회	318,822,368 회 614,182,211 회	614,182,211 회 1,124,989,000 회	1,124,989,000 회 회
채무비율	346,347,219 회	346,347,219 회 602,416,414 회	602,416,414 회 1,300,821,880 회	1,300,821,880 회 2,284,236,190 회	2,284,236,190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53,399,239 회	353,399,239 회 382,211,073 회	382,211,073 회 1,118,278,770 회	1,118,278,770 회 1,984,762,754 회	1,984,762,754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07,322,587 회	307,322,587 회 309,613,939 회	309,613,939 회 1,389,082,636 회	1,389,082,636 회 1,888,795,299 회	1,888,795,299 회 회
채무비율	487,419,881 회	487,419,881 회 117,623,717 회	117,623,717 회 1,133,981,138 회	1,133,981,138 회 1,751,771,289 회	1,751,771,289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12,798,922 회	212,798,922 회 476,782,181 회	476,782,181 회 968,957,688 회	968,957,688 회 1,596,228,489 회	1,596,228,489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446,217,387 회	446,217,387 회 487,927,219 회	487,927,219 회 1,118,278,770 회	1,118,278,770 회 2,284,236,190 회	2,284,236,190 회 회
채무비율	382,282,174 회	382,282,174 회 487,927,219 회	487,927,219 회 1,118,278,770 회	1,118,278,770 회 2,284,236,190 회	2,284,236,190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158,216,142 회	158,216,142 회 324,232,922 회	324,232,922 회 947,887,933 회	947,887,933 회 1,888,795,299 회	1,888,795,299 회 회
채무비율	197,228,217 회	197,228,217 회 387,981,823 회	387,981,823 회 919,470,867 회	919,470,867 회 1,888,795,299 회	1,888,795,299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18,187,848 회	218,187,848 회 486,383,888 회	486,383,888 회 1,274,088,583 회	1,274,088,583 회 회	1,274,088,583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03,130,234 회	303,130,234 회 175,088,029 회	175,088,029 회 276,922,739 회	276,922,739 회 493,217,488 회	493,217,488 회 회
채무비율	152,811,754 회	152,811,754 회 303,130,234 회	303,130,234 회 486,383,888 회	486,383,888 회 1,274,088,583 회	1,274,088,583 회 회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119,742,889 회	119,742,889 회 306,734,029 회	306,734,029 회 436,171,893 회	436,171,893 회 796,368,177 회	796,368,177 회 회
채무비율	306,295,796 회	306,295,796 회 812,411,826 회	812,411,826 회 1,300,821,880 회	1,300,821,880 회 회	1,300,821,880 회 회

* 상기 값을 분류해 제시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회기업	152,811,754 회	152,811,754 회 303,130,234 회	303,130,234 회 486,383,888 회	486,383,888 회 1,274,088,583 회	1,274,088,583 회 회
---------	------------------	--------------------------------	--------------------------------	----------------------------------	----------------------

* 업종 내 사회기업 단위 또는 부속으로 분류된 구간 선물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경영권,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주거 내 교통통신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가 소액 법인합계업, 국제 및 외국기업업

<매출액 성장률 성과 : 소기업용>

주요종	단위: 백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영업 이익 및 이익률	-10.7% 미만	-10.7% 미만 -6.3% 미만	-6.3% 미만 -4.3% 미만	-4.3% 미만 1.1% 미만	1.1% 이상
채무비율	-18.8% 미만	-18.8% 미만 -15.8% 미만	-15.8% 미만 2.4% 미만	2.4% 미만 18.7% 미만	18.7%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1.7% 미만	-21.7% 미만 -12.7% 미만	-12.7% 미만 -3.7% 미만	-3.7% 미만 1.8% 미만	1.8%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7.7% 미만	-27.7% 미만 -18.7% 미만	-18.7% 미만 2.3% 미만	2.3% 미만 1.8% 미만	1.8% 이상
채무비율	-23.6% 미만	-23.6% 미만 2.0% 미만	2.0% 미만 16.0% 미만	16.0% 미만 회	16.0%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1.8% 미만	-21.8% 미만 -5.0% 미만	-5.0% 미만 3.7% 미만	3.7% 미만 1.8% 미만	1.8%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0.2% 미만	0.2% 미만 8.4% 미만	8.4% 미만 20.5% 미만	20.5% 미만 회	20.5% 이상
채무비율	-13.1% 미만	-13.1% 미만 -6.1% 미만	-6.1% 미만 52.3% 미만	52.3% 미만 회	52.3%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8.7% 미만	-28.7% 미만 -5.8% 미만	-5.8% 미만 3.8% 미만	3.8% 미만 23.7% 미만	23.7% 이상
채무비율	-14.2% 미만	-14.2% 미만 8.7% 미만	8.7% 미만 28.7% 미만	28.7% 미만 회	28.7%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8.4% 미만	-28.4% 미만 5.8% 미만	5.8% 미만 28.7% 미만	28.7% 미만 회	28.7%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46.0% 미만	-46.0% 미만 2.4% 미만	2.4% 미만 28.7% 미만	28.7% 미만 회	28.7% 이상
채무비율	-28.0% 미만	-28.0% 미만 3.0% 미만	3.0% 미만 28.0% 미만	28.0% 미만 회	28.0%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10.0% 미만	-10.0% 미만 3.2% 미만	3.2% 미만 16.2% 미만	16.2% 미만 회	16.2% 이상
채무비율	-20.4% 미만	-20.4% 미만 8.4% 미만	8.4% 미만 38.5% 미만	38.5% 미만 회	38.5%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3.3% 미만	-23.3% 미만 0.2% 미만	0.2% 미만 27.8% 미만	27.8% 미만 회	27.8% 이상

* 상기 값을 분류해 제시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회기업	-19.0% 미만	-19.0% 미만 -1.1% 미만	-1.1% 미만 12.0% 미만	12.0% 미만 회	12.0% 이상
---------	-----------	-----------------------	----------------------	---------------	----------

* 업종 내 사회기업 단위 또는 부속으로 분류된 구간 선물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경영권,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주거 내 교통통신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가 소액 법인합계업, 국제 및 외국기업업

<매출액 성장률 성과 : 중기업용>

주요종	단위: 백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영업 이익 및 이익률	-4.7% 미만	-4.7% 미만 13.0% 미만	13.0% 미만 20.0% 미만	20.0% 미만 회	20.0% 이상
채무비율	-4.7% 미만	-4.7% 미만 13.0% 미만	13.0% 미만 20.0% 미만	20.0% 미만 회	20.0%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2% 미만	-3.2% 미만 1.9% 미만	1.9% 미만 6.7% 미만	6.7% 미만 회	6.7%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0% 미만	-3.0% 미만 0.8% 미만	0.8% 미만 6.0% 미만	6.0% 미만 회	6.0% 이상
채무비율	-21.6% 미만	-21.6% 미만 2.4% 미만	2.4% 미만 21.2% 미만	21.2% 미만 회	21.2%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4.3% 미만	4.3% 미만 8.5% 미만	8.5% 미만 20.8% 미만	20.8% 미만 회	20.8% 이상
채무비율	0.0% 미만	0.0% 미만 15.0% 미만	15.0% 미만 30.4% 미만	30.4% 미만 회	30.4%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2.2% 미만	-2.2% 미만 6.8% 미만	6.8% 미만 13.1% 미만	13.1% 미만 회	13.1% 이상
채무비율	-0.5% 미만	-0.5% 미만 6.3% 미만	6.3% 미만 26.3% 미만	26.3% 미만 회	26.3% 이상
영업 이익, 증가 및 이익률 감소(증가)	-38.7% 미만	-38.7% 미만 -0.9% 미만	-0.9% 미만 13.2% 미만	13.2% 미만 회	13.2% 이상

* 상기 값을 분류해 제시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회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회기업	-19.0% 미만	-19.0% 미만 -1.1% 미만	-1.1% 미만 12.0% 미만	12.0% 미만 회	12.0% 이상
---------	-----------	-----------------------	----------------------	---------------	----------

* 업종 내 사회기업 단위 또는 부속으로 분류된 구간 선물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경영권,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주거 내 교통통신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가 소액 법인합계업, 국제 및 외국기업업

25. 영업 성과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4-1-2	경제 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SVI 연계 지표	12. 영업 성과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업종 대비 기업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성장률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직전 2년치 재무제표(예 : 2025년 측정 시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년도 [데이터 범위] N/A [데이터 산식] 영업이익 성장률(%) $= [(2024년 영업이익(a) - 2023년 영업이익(b)) / 2023년 영업이익(b)] \times 100$</p>																													
점검 기준	<p><SVI 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h>등급</th> <th>점수</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영업 이익</td> <td rowspan="3">6점</td> <td>A</td> <td>3점</td> <td>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60% 이상</td> </tr> <tr> <td>B</td> <td>2점</td> <td>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td> </tr> <tr> <td>C</td> <td>1점</td> <td>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미만</td> </tr> <tr> <td rowspan="3">영업 이익 성장률</td> <td rowspan="3">4점</td> <td>A</td> <td>2점</td> <td>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td> </tr> <tr> <td>B</td> <td>1.5점</td> <td>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td> </tr> <tr> <td>C</td> <td>1점</td> <td>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td> </tr> </tbody> </table>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영업 이익	6점	A	3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60% 이상	B	2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미만	영업 이익 성장률	4점	A	2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1.5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영업 이익	6점	A	3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60% 이상																										
		B	2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미만																										
영업 이익 성장률	4점	A	2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1.5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비고	<p>작성방법</p> <p>① 측정 대상연도(2024년) 재무제표와 전년도(2023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을 산입해 합산에 따라 기재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 영업이익</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 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2024년도 영업이익 (a)</th> <th>2023년도 영업이익 (b)</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영업이익 성장률 $(\frac{a-b}{b}) \times 1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text{영업이익 성장률}(\%) = \frac{2024년\ 영업이익(a) - 2023년\ 영업이익(b)}{2023년\ 영업이익(b)} \times 100$ </p> <p>①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기재 ②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를 표기하여 기재 * 표시용 영업손실액 총 500,000원 일어난 경우 「- 500,000」로 기재 ③ 영업활동에 통한 수입은 채회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일하여, 금회 차입금이나 부채금 등엔 해당되지 않음.</p> </div>			2024년도 영업이익 (a)	2023년도 영업이익 (b)	영업이익 성장률 $(\frac{a-b}{b}) \times 100$																								
2024년도 영업이익 (a)	2023년도 영업이익 (b)																													
영업이익 성장률 $(\frac{a-b}{b}) \times 100$																														

영업 성과 - 소기업용

주요종	단위: 원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급, 영업 및 지원서비스	-75,224,757 원	-10,221,791 원	42,075,026 원
제조업	-75,852,360 원	-75,452,903 원	30,576,801 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44,828 원	6,344,639 원	34,253,236 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91,804,571 원	-91,884,177 원	36,990,049 원
건설업	-85,386,217 원	-20,274,271 원	36,945,719 원
도매 및 소매업	-61,408,367 원	-41,459,207 원	11,007,157 원
음식 및 숙박업	-143,423,518 원	-143,423,512 원	12,714,848 원
숙박 및 음식점업	-72,856,426 원	-72,856,426 원	-72,856,426 원
문화예술행업	-71,884,517 원	-71,884,517 원	8,816,190 원
정보통신업	-142,158,408 원	-142,158,408 원	-68,487,876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464,802 원	-85,464,802 원	19,440,000 원
서비스업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1,389,128 원	-91,389,128 원	6,431,884 원
교육 서비스업	-73,088,577 원	-73,088,577 원	-2,413,008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18,087 원	-86,818,087 원	0 원
제조, 서비스 및 기타업의 서비스업	-86,814,086 원	-86,814,086 원	-6,211,308 원
협회 및 단체, 수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5,943,042 원	-85,943,042 원	3,446,581 원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서비스기업 기준으로 출생			
전체 서비스기업			
	-75,129,176 원	-75,129,176 원	13,666,401 원

* 업종 내 서비스기업 부패 또는 부패로 관련된 구간 선별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
- 보건업, 교육 및 사회복지, 공공 행정, 과학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 가스 내 고령층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음
- 기타 기타 행정업(기타), 국제 및 외국기업

영업 성과 - 중기업용

주요종	단위: 원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제조업	-85,349,049 원	-85,349,049 원	611,118,376 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25,488,601 원	25,488,601 원	546,396,298 원
도매 및 소매업	-134,129,300 원	-134,129,300 원	147,840,199 원
숙박 및 음식점업	-168,859,725 원	-168,859,725 원	64,811,936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8,983,103 원	-308,983,103 원	792,732,181 원
서비스업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887,901 원	7,887,901 원	210,482,695 원
교육 서비스업	-129,347,138 원	-129,347,138 원	43,007,026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3,427,223 원	-83,427,223 원	37,887,846 원
제조, 서비스 및 기타업의 서비스업	-428,811,145 원	-428,811,145 원	62,475,036 원
협회 및 단체, 수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7,542,080 원	-307,542,080 원	52,440,236 원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서비스기업 기준으로 출생			
전체 서비스기업			
	-73,126,712 원	-73,126,712 원	13,666,401 원

* 업종 내 서비스기업 부패 또는 부패로 관련된 구간 선별이 불가능한 업종(11개) 제외
-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공공 행정,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운수 및 항공업, 정보통신업, 문화 및 오락업, 무역업, 과학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 가스 내 고령층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음
- 기타 기타 행정업(기타), 국제 및 외국기업

영업이익 성장률 성과 - 소기업용

주요종	단위: %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보급, 영업 및 지원서비스	-11.2%	-11.2% 이상 43.8% 미만	43.8% 이상
제조업	-68.2%	-68.2% 이상 76.7% 미만	76.7%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8.1%	-48.1% 이상 21.8% 미만	21.8%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100.0%	-100.0% 이상 51.0% 미만	51.0% 이상
건설업	-66.0%	-66.0% 이상 97.4% 미만	97.4% 이상
도매 및 소매업	-48.7%	-48.7% 이상 79.0% 미만	79.0% 이상
음식 및 숙박업	-38.1%	-38.1% 이상 100.3% 미만	100.3%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198.3%	-198.3% 이상 41.7% 미만	41.7% 이상
문화예술행업	-102.4%	-102.4% 이상 80.2% 미만	80.2% 이상
부동산업	-158.2%	-158.2% 이상 58.9% 미만	58.9%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3.7%	-83.7% 이상 86.7% 미만	86.7% 이상
서비스업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2.3%	-152.3% 이상 51.3% 미만	51.3% 이상
교육 서비스업	-100.0%	-100.0% 이상 76.0% 미만	76.0%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0% 이상 79.7% 미만	79.7% 이상
제조, 서비스 및 기타업의 서비스업	-98.3%	-98.3% 이상 88.8% 미만	88.8% 이상
협회 및 단체, 수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1%	-71.1% 이상 75.1% 미만	75.1% 이상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서비스기업 기준으로 출생			
전체 서비스기업			
	-87.0%	-87.0% 이상 44.8% 미만	44.8% 이상

* 업종 내 서비스기업 부패 또는 부패로 관련된 구간 선별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
- 보건업, 교육 및 사회복지, 공공 행정, 과학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 가스 내 고령층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음
- 기타 기타 행정업(기타), 국제 및 외국기업

영업이익 성장률 성과 - 중기업용

주요종	단위: %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제조업	-62.9%	-62.9% 이상 80.2% 미만	80.2%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75.2%	-75.2% 이상 8.8% 미만	8.8% 이상
도매 및 소매업	-51.0%	-51.0% 이상 14.1% 미만	14.1%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67.8%	-67.8% 이상 82.1% 미만	82.1%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4.9%	-474.9%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서비스업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4.3%	-64.3% 이상 87.8% 미만	87.8% 이상
교육 서비스업	-138.8%	-138.8% 이상 88.4% 미만	88.4%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1.9%	-111.9% 이상 33.1% 미만	33.1% 이상
제조, 서비스 및 기타업의 서비스업	-96.1%	-96.1% 이상 81.9% 미만	81.9% 이상
협회 및 단체, 수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7.0%	-187.0% 이상 10.2% 미만	10.2% 이상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서비스기업 기준으로 출생			
전체 서비스기업			
	-87.0%	-87.0% 이상 44.8% 미만	44.8% 이상

* 업종 내 서비스기업 부패 또는 부패로 관련된 구간 선별이 불가능한 업종(11개) 제외
-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공공 행정,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운수 및 항공업, 정보통신업, 문화 및 오락업, 무역업, 과학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 가스 내 고령층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음
- 기타 기타 행정업(기타), 국제 및 외국기업

26. 노동생산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4-1-3	경제 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SVI 연계 지표	13. 노동생산성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노동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측정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업종 대비 근무시간 당 매출액과 근무시간 당 매출액 성장률을 확인 																													
성과 점검	<p>[데이터 원천] ▲ 직전 2개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 직전 2개년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등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이 확인가능한 자료 ▲ 직전 2개년 재무제표</p> <p>[데이터 기간] 직전 회계년도</p> <p>[데이터 범위] N/A</p> <p>[데이터 산식] 노동생산성 = 2024년 매출액(a) / 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노동생산성 성장률(%) = [(2024년 노동생산성(c) - 2023년 노동생산성(d)) / 2023년 노동생산성(f)] × 100</p>																													
점검 기준	<p><SVI 등급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h>등급</th> <th>점수</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노동 생산성</td> <td rowspan="3">3점</td> <td>A</td> <td>3점</td> <td>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td> </tr> <tr> <td>B</td> <td>2점</td> <td>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td> </tr> <tr> <td>C</td> <td>1점</td> <td>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td> </tr> <tr> <td rowspan="3">노동 생산성 성장률</td> <td rowspan="3">2점</td> <td>A</td> <td>2점</td> <td>시간당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td> </tr> <tr> <td>B</td> <td>1.5점</td> <td>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td> </tr> <tr> <td>C</td> <td>1점</td> <td>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td> </tr> </tbody> </table>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노동 생산성	3점	A	3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B	2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노동 생산성 성장률	2점	A	2점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1.5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노동 생산성	3점	A	3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B	2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노동 생산성 성장률	2점	A	2점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60% 이상																										
		B	1.5점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시간당 매출액 성장률 분포의 20% 이상 60% 미만																										
		C	1점	영업이익 성장률이 동종업종 영업이익 성장률 분포의 20% 미만																										
비고	<p>작성방법</p> <p>☐ 측정 대상년도(2024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급근로자의 총 근무시간 및 노동생산성을 산정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데이터 원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2024년 매출액(a)</td> <td>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노동생산성 (c= a÷b)</td> </tr> <tr> <td>2023년 매출액(d)</td> <td>2023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e)</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노동생산성 (f= d÷e)</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노동생산성 성장률 (g=(c-f)÷f × 100)</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생산성 = $\frac{2024년\ 매출액(a)}{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p>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생산성 성장률(%) = $\frac{2024년\ 노동생산성(c) - 2023년\ 노동생산성(f)}{2023년\ 노동생산성(f)} \times 100$</p> <p>(*) 매출액: 2024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재 (**)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2024년 12월말 기준에 유급근로자 전체 근무시간</p> </div>			2024년 매출액(a)	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2024년 노동생산성 (c= a÷b)		2023년 매출액(d)	2023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e)	2023년 노동생산성 (f= d÷e)		노동생산성 성장률 (g=(c-f)÷f × 100)																		
2024년 매출액(a)	2024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b)																													
2024년 노동생산성 (c= a÷b)																														
2023년 매출액(d)	2023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e)																													
2023년 노동생산성 (f= d÷e)																														
노동생산성 성장률 (g=(c-f)÷f × 100)																														

비고

시간당 매출액 : 소기업용

주요종류	단위: 원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음식, 음료 및 커피업	215,896 원	275,896 원 817,818 원	437,319 원
제조업	219,779 원	276,779 원 976,318 원	419,218 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48,423 원	348,423 원 1,273,493 원	1,273,493 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256,477 원	256,477 원 844,233 원	546,211 원
건설업	698,935 원	698,935 원 1,216,374 원	1,216,374 원
도매 및 소매업	428,257 원	428,257 원 1,162,408 원	1,162,408 원
운수 및 항공업	287,509 원	287,509 원 884,000 원	884,000 원
숙박 및 음식점업	186,762 원	186,762 원 381,477 원	381,477 원
정보통신업	334,115 원	334,115 원 734,925 원	734,925 원
부동산업	486,387 원	486,387 원 916,534 원	916,534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2,197 원	382,197 원 836,666 원	836,666 원
서비스업 중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2,864 원	222,864 원 418,524 원	418,524 원
교육 서비스업	246,778 원	246,778 원 545,288 원	545,288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6,575 원	186,575 원 322,836 원	322,836 원
예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229,860 원	229,860 원 481,938 원	481,938 원
협회 및 단체, 우체 및 기타 서비스업	103,590 원	103,590 원 432,591 원	432,591 원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업자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업자기업	271,237 원	271,237 원 752,522 원	752,522 원
----------	-----------	------------------------	-----------

* 업종 내 사업자기업 부재 또는 부재으로 응답률 구간 선들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금융업, 교육 및 보건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거주 내 교통통신 및 운수 서비스 생산업, 도매 및 소매업

시간당 매출액 : 중기업용

주요종류	단위: 원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제조업	1,416,248 원	1,416,248 원 3,287,588 원	3,287,588 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627,372 원	627,372 원 836,222 원	836,222 원
도매 및 소매업	1,019,790 원	1,019,790 원 2,620,828 원	2,620,828 원
숙박 및 음식점업	361,156 원	361,156 원 489,282 원	489,282 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2,187 원	382,187 원 836,666 원	836,666 원
서비스업 중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2,864 원	222,864 원 418,524 원	418,524 원
교육 서비스업	246,778 원	246,778 원 545,288 원	545,288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6,575 원	186,575 원 322,836 원	322,836 원
예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229,860 원	229,860 원 481,938 원	481,938 원
협회 및 단체, 우체 및 기타 서비스업	103,590 원	103,590 원 432,591 원	432,591 원

* 상기 업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업자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업자기업	271,237 원	271,237 원 752,522 원	752,522 원
----------	-----------	------------------------	-----------

* 업종 내 사업자기업 부재 또는 부재으로 응답률 구간 선들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금융, 정보 및 미디어, 상업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운수 및 항공업, 정보통신업, 교육 및 보건업,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거주 내 교통통신 및 운수 서비스 생산업, 도매 및 소매 생산업,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노동생산성 성장률 - 소기업용

주요종류	단위: %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음식, 음료 및 커피업	-30.2% 미만	-12.2% 이상 58.7% 미만	58.7% 이상
제조업	-17.6% 미만	-17.6% 이상 36.1% 미만	36.1%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4.4% 미만	-4.2% 이상 -4.2% 미만	-4.2%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40.9% 미만	-42.9% 이상 -1.8% 미만	-1.8% 이상
건설업	-22.8% 미만	-23.6% 이상 31.8% 미만	31.8% 이상
도매 및 소매업	-22.7% 미만	-23.7% 이상 25.8% 미만	25.8% 이상
운수 및 항공업	-5.9% 미만	-3.9% 이상 29.7% 미만	29.7%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16.8% 미만	-16.8% 이상 27.2% 미만	27.2% 이상
정보통신업	-28.4% 미만	-28.4%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부동산업	-40.9% 미만	-48.3% 이상 21.9% 미만	21.9%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2% 미만	-32.2% 이상 43.2% 미만	43.2% 이상
서비스업 중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9.1% 미만	-13.1% 이상 22.7% 미만	22.7% 이상
교육 서비스업	-30.8% 미만	-22.8% 이상 52.9% 미만	52.9%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4.7% 미만	-24.1% 이상 23.0% 미만	23.0% 이상
예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17.5% 미만	-17.5% 이상 44.6% 미만	44.6% 이상
협회 및 단체, 우체 및 기타 서비스업	-24.4% 미만	-24.0% 이상 33.8% 미만	33.8% 이상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업자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업자기업	-21.4% 미만	-21.4% 이상 17.0% 미만	17.0% 이상
----------	-----------	-----------------------	----------

* 업종 내 사업자기업 부재 또는 부재으로 응답률 구간 선들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금융업, 교육 및 보건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거주 내 교통통신 및 운수 서비스 생산업, 도매 및 소매업

노동생산성 성장률 - 중기업용

주요종류	단위: %		
	20% 미만	20% 이상 60% 미만	60% 이상
제조업	-17.2% 미만	-17.2% 이상 33.9% 미만	33.9% 이상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업	-6.5% 미만	-6.5% 이상 3.9% 미만	3.9% 이상
도매 및 소매업	-7.8% 미만	-7.8% 이상 8.4% 미만	8.4%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22.2% 미만	-12.2% 이상 52.4% 미만	52.4% 이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2% 미만	-28.2% 이상 57.6% 미만	57.6% 이상
서비스업 중의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 미만	1.2% 이상 19.1% 미만	19.1% 이상
교육 서비스업	-8.1% 미만	-8.1% 이상 29.2% 미만	29.2% 이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 미만	-5.9% 이상 19.1% 미만	19.1% 이상
예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20.9% 미만	-18.9% 이상 11.6% 미만	11.6% 이상
협회 및 단체, 우체 및 기타 서비스업	-42.0% 미만	-42.0%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 상기 업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전체 사업자기업 기준으로 측정

전체 사업자기업	-21.0% 미만	-21.0% 이상 17.0% 미만	17.0% 이상
----------	-----------	-----------------------	----------

* 업종 내 사업자기업 부재 또는 부재으로 응답률 구간 선들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금융, 정보 및 미디어, 상업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운수 및 항공업, 정보통신업, 교육 및 보건업,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거주 내 교통통신 및 운수 서비스 생산업, 도매 및 소매 생산업,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27. 혁신성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4-1-4	경제 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SVI 연계 지표	14. 혁신노력도																																															
항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활동과 관련된 혁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각 판단 요소를 확인 및 추정 																																															
성과 점검	<p>[데이터원천] 조직이 제출한 자료 일체</p> <p>[데이터기간] 직전 회계년도</p> <p>[데이터범위] N/A</p> <p>[데이터산식] N/A</p>																																															
점검 기준	<p><SVI 등급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배점</th> <th>등급</th> <th>점수</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매출액</td> <td rowspan="6">6점</td> <td>S</td> <td>5점</td> <td>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td> </tr> <tr> <td>A</td> <td>4점</td> <td>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우수한 수준이다</td> </tr> <tr> <td>B</td> <td>3점</td> <td>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보통 수준이다</td> </tr> <tr> <td>C</td> <td>2점</td> <td>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다</td> </tr> <tr> <td>D</td> <td>1점</td> <td>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td> </tr> <tr> <td>-</td> <td>0점</td> <td>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td> </tr> <tr> <td rowspan="6">매출액 성장률</td> <td rowspan="6">4점</td> <td>S</td> <td>5점</td> <td>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td> </tr> <tr> <td>A</td> <td>4점</td> <td>혁신 노력의 성과가 우수한 수준이다</td> </tr> <tr> <td>B</td> <td>3점</td> <td>혁신 노력의 성과가 보통 수준이다</td> </tr> <tr> <td>C</td> <td>2점</td> <td>혁신 노력의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다</td> </tr> <tr> <td>D</td> <td>1점</td> <td>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td> </tr> <tr> <td>-</td> <td>0점</td> <td>혁신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매출액	6점	S	5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A	4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우수한 수준이다	B	3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보통 수준이다	C	2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다	D	1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0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	매출액 성장률	4점	S	5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A	4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우수한 수준이다	B	3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보통 수준이다	C	2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D	1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0점	혁신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구분	배점	등급	점수	기준																																												
매출액	6점	S	5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A	4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우수한 수준이다																																												
		B	3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보통 수준이다																																												
		C	2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다																																												
		D	1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0점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																																												
매출액 성장률	4점	S	5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A	4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우수한 수준이다																																												
		B	3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보통 수준이다																																												
		C	2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D	1점	혁신 노력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	0점	혁신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비고	<p><조사자 안내 가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노력도 지표는 직전년도 최근 2년간 실적 기준(예:2023년, 2024년)으로 측정,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3년 이전에 등록된 실적도 인정 또한, 점수 부여는 기업이 기재내용에 따라 조사자가 측정·판단하여 각 구분별(과정의 혁신/혁신의 결과)로 각각 5점 이내에서 등급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각 부문별 사례 여부는 혁신노력도 평가참조 사항 확인 후 조사자가 정성적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결과' 평가 시 '과정의 혁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부여 * '과정의 혁신'과 '혁신의 결과' 평가시 기타에 대한 혁신 노력은 평가참조사항의 예와 중복되지 않을 때 인정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23년, 2024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 혁신노력 및 성과를 심정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구분	작성사항	
과정의 혁신 (50%)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주요과업에 혁신의 노력을 조인할 수 있음	
	혁신노력	분야
	<p>투입의 혁신</p> <p>① (인력관리력 강화) 채용-서비스 거점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 * 기술사, 연구개발에서 근무한 직 종 전문인력 자사 사장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면함</p> <p>② (R&D 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등</p>	<p>출력의 혁신</p> <p>①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시스템 개선과 우수 내용 등</p> <p>② (기업 내·외부 소통노력) Bottom-up 방식의 사내 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우수 혁신 수확 내용 등</p> <p>③ (기술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지원부서, 기업부설형지 연구소, 창업허사 등 설립, 신제품 출시 등</p>
* 인력당 실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 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50%)	<p>※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p> <p>① (재무 성과) 경영성과/지배채널/공공기관/민간계 투자 유치 또는 지원사업 선정 등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증가 또는 비용 감소 등</p> <p>② (고객 만족) 이용자 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파우치를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등</p> <p>③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원-등록, R&D 등 국제 인증 여부 등 *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3년 12월말 등록권 지식재산권의 실적 인정</p> <p>④ (기업 성장)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p>	

비고

작성사례

① 과업의 혁신 투입 사례

투입의 혁신	내용	혁신 노력 사례	분야
인력투입	전문인력도입	기업 안전 선진화에 안전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들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도입한 사례	기체, 행정, 회계, 재무, 인사, 안전 IT, 복지, 사회공헌, 홍보 인력 도입
		제품 혁신을 촉진시키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다들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도입한 사례	제품 및 시장 개발, 생산,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인력 도입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들 분야에서 사출	시외차사, 전동기 지원, 전문인력 투입 사례
예산투입	R&D 투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	제품개발투자, 디자인개발, 특허 및 상표 등록, 기술개발, 산학협력기술 개발, 기술이전, 제품인증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들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	없어 도입, 온라인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투자 운영을 위해 다들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한 사례	무상연구소, 연구개발 별도 부서 운영

② 과업의 혁신 활동 사례

활동의 혁신	내용	혁신 노력 사례	분야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시스템 개선	조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 개선의 사례	기업역량 진단, 조직인간, 조직개발, 전략수립, 워크로드그룹 도입, 인력 시스템 구축, 행정프로세스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경영진행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제도 개선의 사례	성과제도 구축, 역량강화 업무 협약, 전문가 지원, 전문인력 협약, 업무관리제도 도입, KPI를 통한 사업관리, 행정시스템 개선
		조직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사 및 근무제도 개선 사례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한일 및 시차출퇴근제
혁신활동	기업 내부 소문 노력	기업 내부 혁신소문을 전출하게 하기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대한 의견 수렴 활동과 제도 개선 사례	별문포서, 소통채널 구축, 노사협력회 구축, 연수 및 회의 방식 개선, 노사협력회 구성, 경영자담화 구성, 경영자담화 포스터,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구축
		기업 외부 소문을 전출하게 하기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대한 의견 수렴 활동과 제도 개선 사례	다의 채널, 시간상의 협의, 시간상의 제한, 안북도 조서, 전문가 지원, 자회사와 협조 유도, 사례
기술개발	기술개발	제품 판매 확대와 관련하여 다들 분야에서 관련된 활동의 사례	경쟁사 분석, 제품인증도 조사, 제품개발도, 교육자료, 인력, 홍보, 사업보고서, R&D 관련 업무협약, 자회사 설립, 정부사업참여, 온라인판매 채널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다들 분야에서 관련된 활동의 사례	시장조사,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지원, 연구개발활동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다들 분야에서 관련된 활동의 사례	서비스 개발,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개편과 관련하여 다들 분야에서 관련된 활동의 사례	사업개발 및 성공, 전문역능을 구축, 온라인 마케팅

③ 혁신 성과 사례

혁신의 결과	내용	혁신 노력 혁신사항	분야
혁신효과	재무성과	직원 채용 성과로서 기업이 채용채널에서 적극적으로 다들 분야에서 관련하여 개선 결과	채용 증가, 영입일자, 입사준비도, 기업 순이익, 이윤절감, 업무효율성
		간접적으로 채용채널에 기여할 할 수 있는 결과로서 다들 분야에서 관련된 사례	신규채널 확보, 신규 채용채널 확보, 시간외적 확보, 신규사업수주, 사업영역확대, 신규사업영역확대, 정부사업 수월기반 선형, 신제품개발도 향상, 조직확대
	고객관계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대한 고객 만족도의 증가에서 다들 분야에서 관련된 사례	안북도 조사, 직원 조사(FAI 등)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들 분야에서 관련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한 결과		고객의견을 반영한 용량 개선,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 증진, 제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율 증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대상 확대	
기업적 성과	다들 분야에서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허 출원 사례	특허출원, 디자인, 지적재산권, 상표권	
		다들 분야에서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획득 사례	공인인증 관련인증획득, 식용기능인증획득, 친환경 인증
	다들 분야에서 관련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대표적인 우수사례 인증 사례	기술 관련 기관 표창, 입상, 정부 우수기업 선정	
다들 분야에서 관련하여 직원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	자격증, 기술관련 개인 표창 및 상급		

혁신노력도(과정의 혁신) 분야별 측정 사례

① 제도개선 노력

- ▲혁신적인 근무체계, 7시간 근무 5일제
- ▲근무형태의 유연성, 시차출퇴근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 ▲수평적인 팀 네트워크 조직을 도입하여 기업문화 개선
- ▲겉제라인 최소화를 통한 행정운영 효율화
- ▲신제품 개발
- ▲조직 내 소통과 업무공유가 원활
- ▲각 담당자 및 팀장에게 자체 권한 부여
- ▲인사제도 관련 직급이 실질적으로 없는 구조
- ▲기기 렌탈을 통해서 3배 이상의 생산성향상
- ▲직무/생활 멘토링 연결 지원, 레저 활동에 회사 차량 지원
- ▲의사결정기구와 사업팀 간 소통구조 확립 →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제품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구성
- ▲돌봄휴가제: 자녀, 부모 돌봄 휴가 연간 2일 사용 가능
- ▲월1회 전 구성원 모임 시행: 경영성과 보고, 업무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
- ▲대표가 직접 신입직원 교육을 하면서 의견 교류
- ▲운영회의, 팀별회의, 전체회의 등 다양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고령인 고령인력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등
-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제공계약서에 명시 및 개선 노력
- ▲실무 책임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권한을 부여
- ▲탄력근무제 운영(업무팀별 출퇴근 시간 연동 운영)
- ▲상호 DC(Direct Communication)를 통한 벽 없는 소통 기업문화 창출
- ▲온라인 보고 및 회의로 관리시간 단축
- ▲채용은 공개선발 원칙, 해당 부에서 직접 채용(경영자의 채용 관여 없음)
- ▲직급 구분을 수평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 연구원이 한 개 이하의 사업에 종괄하는 것을 원칙
- ▲업무별 사업팀 및 업무분장 세분화 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정성 제고
- ▲의사소통 : 필요시 자발적 회의건의 및 개최(상시 건의 회의 : 안건의 빠른 처리)

② 전문인력 도입

- ▲회계 담당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자본잠식 00% 완화
- ▲행사 홍보 및 흡소판과 관련한 마케팅 전문 인력을 채용을 통한 관련 계약00건 달성
- ▲청년혁신가 사업 선정 및 마케팅, 홍보, 전문 인력을 채용을 통한 홍보 채널 00건 추가
- ▲행사기획파트 활성화를 위해 행사기획사 10년 운영경력자를 대외협력 부장으로 채용
- ▲경영지원 /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③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 ▲내부 온라인 게시판 적극 활용
- ▲Bottom-up 방식의 사내제안 증가
- ▲사업을 발굴·개발하는데 있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
- ▲근로자 회의 결과 내용을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
- ▲조합원 운영참여 구조 마련을 위한 신규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 ▲프로젝트에 따른 PM 배정으로 자유로운 Bottom-up 의견 제시
- ▲월 1회 전원 회의시, 사내제안 및 토론 활성화
- ▲신제품 개발 시 전 직원 대상 포장 디자인 투표 및 시음을 통한 의견 수용
- ▲조합원 및 임직원 월례회의에서 의견 수렴
- ▲사내망(SNS 및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를 통한 특허출원 00건
- ▲매월 강사 워크숍을 진행하여 강사들의 다양한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의 제안사항 및 근로자 회의를 통해 의견정취

④ 경영시스템 개선

- ▲행정관리 프로그램 도입
- ▲입주자 모집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을 통해 회계 처리 개선, 인사제도 개선
- ▲서비스 구매경로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약사이트로의 온라인채널 다양화
- ▲모집, 교육, 파견, 관리 시스템의 확보
-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진단보고서의 퀄리티를 향상
- ▲사회적기업 경영전략 리모델링 지원사업(경영&회계 자문)
- ▲기술동향분석 및 기술 개발 설계, 기술 분석 및 유지를 위한 자문 협약 체결
- ▲경영 컨설팅, 경영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BI개발, 홈페이지 구축진행

- ▲온라인으로 교육신청 및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제품생산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도입과 메일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추구
- ▲인사/노무, 회계/사무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영시스템 개선
- ▲공정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공방법을 표준화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응대 강화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 ▲비대면 업무보고로 불필요한 업무지양 및 업무성과 공유체계 구축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 ▲그룹웨어(비즈메카) 시스템 도입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 ▲공인노무사 컨설팅 및 자문

⑤ 기술개발

- ▲새로운 방식으로 판로개척
- ▲신규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 ▲판매제품 고객사 방문 사전 서비스 조사
-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 수렴(프로그램 진행방법 개선)
- ▲해외 식품 전시회에 참가하며 바이어들의 제품 호응도를 파악
- ▲기술동향을 파악, 업체별 신 건축자재 비교·분석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
- ▲조합 인식조사 실시 및 돌봄 시장 분석 TF 구성
- ▲교육 트렌드에 관한 시장 분석
- ▲HACCP 인증
- ▲사업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⑥ R&D 투자

- ▲QR코드 보드게임구성 새로운 방식 도입
- ▲섬유산업이 발달된 해외 굴지에서 기업의 사업모델을 찾고 있음
- ▲시제품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 ▲ICT를 활용한 조합의 독창적인 서비스 솔루션 개발 준비
- ▲노인 돌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장비투자
- ▲제품 성분 측정 장비 도입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함
- ▲노인 증가에 따라 시니어 상품 개발
- ▲제품수준 향상을 위해 신형실사출력기(JV300K) 구입
- ▲진단, 검사용 의료기기 신규 구매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스펙 연구 진행
- ▲00기계 도입을 통한 제품 효율성 00% 증가

⑦ 기타

- ▲후원자 개발
- ▲효율적인 광고비소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 ▲국가 복지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 노력,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기획팀 운영
- ▲연1회 직무만족도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운영에 반영
- ▲구성원 애로사항 해결 노력
- ▲외부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직원의견 수렴
- ▲판촉물(경조사 봉투)을 개발하여 배포
- ▲타 유료직업소개소 대비 낮은 수수료로 회원(취약계층포함) 부담 절감 및 수수료 차액으로 지역사회 소비에 기여